

農地改革史編纂資料 I (1984. 5)

農地改革史編纂의 意義와 事業計劃

韓國農村經濟研究院

RR 2346

빈 면

目 次

1. 農地改革史編纂趣旨	3
2. 農地改革史編纂小史	6
3. 農地改革史編纂計劃(韓國農村經濟研究院：第4次試圖)	22
附 錄	
農地改革關係資料目錄	25

빈 면

1. 農地改革史編纂趣旨

農地改革事業이 實施되고서도 어언 1/3 世紀가 흘렀다. 한 世代가 흐르다보니 農地改革을 단행했던 분들도 차츰 他界해가고 있으며 正規의 事業報告書도 마련되지 않은 채 關聯資料마저 逸失되어가고 있다. 1970 年에 『農地改革史 上卷』이 刊行되었으나 農地改革前史部分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의 事業自體에는 言及조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歷史的인 農地改革을 斷行하고서도 이의 具體的인 內容을 알지 못해 왔다. 오늘의 學者들이 500 여년 전에 있었던 麗末鮮初의 田制改革을 연구하듯 後代의 學者들이 前代의 農地改革을 研究한다면 關聯記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오늘의 우리를 무엇이라고 評할 것인가? 더구나 農地改革事業이 建國直後에 있었던 最大의 經濟施策이고 政府의 公式事業이면서도 公式報告書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理由로서도 辨明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農地改革에 대한 學界의 評價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改革自體에 대한 認識마저 不徹底했던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否定的인 見解마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좋은 나쁜 現在의 韓國農業은 農地改革에서 출발된 延長線上에 位置하며, 地主階級이 沒落된 것은 農地改革 때문임에 疑心의 餘地가 없다. 이에 따라 日本이나 臺灣의 農政은 바로 農地改革에서 이룩된 自作農體制를 基軸으로 하여 展開되어 왔고, 이들 나라에 있어서 農地改革의 歷史的 意義는 거의 絶對視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 事業에 대한 顛末報告는 中央政府는 물론 縣別로까지 整理되고 있다. 또한 臺灣에서는 農地改革博物館을 위시해서 同訓練所까지 設置하여 世界各國의 土地改革要員을 養成시키기 까지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에는 어째서 農地改革이 低評價되거나 否定的인 對象이 되어야 했는가?

農地改革에 대한 學界의 態度가 冷淡했던 데에는 역시 根據가 없지 않다. 改革自體가 地主層에 의해서 主導되고 建國初期의 行政未熟과 6.25 動亂 등에 의한 時代的인 制約性을 감안할 때, 農地改革에는 중대한 自體矛盾이 없지 않다.

그러나 農業經濟學者들이 日帝時代에 있었던 小作爭議에 관해서는 異口同聲으로 강조하면서도 解放後의 農地改革에 관해서 無關心하거나 冷淡한 態度를 취한다는 것은 方法論上으로 問題가 없지 않다. 日帝下의 小作爭議가 궁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農地改革 때문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日帝時代 뿐만 아니라 歷代王朝를 통해서 이 나라 農民을 支配해 오고 收奪해 왔던 地主階級이 이땅에서 撤廢된 것은 바로 農地改革 때문이었던 것이다. 農地改革에 의해서 農民이 農地를 分配받았다고 해서 모

두 經濟的으로 裕福해지고 幸福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政治經濟를 主導했던 地主階級의 經濟的 基盤을 崩壞시키었다는 사실만은 否定할래야 否定될 수 없는 엄연한 歷史的 大事件임에 의심의 餘地가 없다. 歷史的 事件은 遠近法的 視角에서 전체가 評價될 필요가 있다.

全國民의 8割以上을 차지하던 農民이 社會經濟的 隸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 과연 오늘의 民主主義를 云謂할 수 없었겠는가? 결국 8.15가 日帝로부터의 政治的 解放이었다면 農地改革은 韓國歷史上 최초로 耕者有田의 理想을 실현한 社會經濟史的 變革이고 한뼉의 땅이라도 가져보겠다면 農民의 恨맺힌 所望을 이룬 이 나라 民主主義의 經濟的 土臺의 構築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農地改革은 비단 農業에 限定된 문제라기 보다 建國史의 한 斷面을 이룬 이 나라 國民史의 視角에서 再照明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農地改革事業이 一段落된 1958년에 이의 成果를 恒久的으로 維持하기 위해 農地法 制定이 提案되었으나 1960年の 政治激動(4.19)으로 流産되어 버렸다. 이 이후 이것을 포함해서 여섯번에 걸친 立法試圖가 있었으나 모두 霧散되고 말았다. 農地改革에 불구하고 韓國歷史上 法制的인 農地制度가 없었던 時期는 바로 現在를 포함한 지난 30여년이었음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 보니 農地改革의 成果는 제멋대로 漂流되어 農地改革때에 分配된 55萬町步 만큼의 小作地가 또다시 復活되고 所有權마저 都市人의 投機對象으로 轉落되어 가고 있다. 耕者有田의 理想이 烏有化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얼핏 생각하면 30여년 전에 있었던 過去之事를 지금에 와서 回想하고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無謀한 平地風波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農地改革의 문제는 過去之事인 동시에 엄연한 現實問題이기도 하다.

첫째로, 지난날의 改革成果를 한 世代만이라도 維持못한다면 現在의 改革成果도 한 世代以內에 消滅되어버릴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로, 우리가 歷史的 大課業인 農地改革을 실시한 이상, 그 이후의 農政基調는 당연히 農地改革에 의해 創設된 自作農體制를 維持하는 線上에서 推進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실은 自作農을 維持하기 위한 基本的인 法制度마저 가져보지 못했다. 農地改革以後의 韓國農政이 農政의 基本座標마저 設定하지 못한채 오늘까지 漂流되어 온 根本的인 理由를 農地法 不在에서 단적으로 찾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農地法不在가 農政不實을 胚胎시킨 셈이 되었다. 農政不實이라고 한다면 異議를 提起할지도 모르나 오늘날 自作農體制가 崩壞되어가는 데에 束手無策이라는 엄연한 現實事態야말로 農政

不實의 한 局面임에 疑心의 餘地가 없다.

세째로, 農政의 올바른 方向을 設定하면 우선 自作農體制를 維持하기 위한 農地法부터 있어야 했고, 이러자면 農地改革으로 創設된 우리의 自作農體制가 어떤 것이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把握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現時點에 와서 農地改革史를 整理한다는 것은 晩時之歎이 없지 않지만 어차피 하지 않을 수 없는 農政再整備의 첫 課業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農地改革史編纂事業은 단순히 過去之事를 정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정될 農地法 制定의 基礎作業인 동시에 農政方向에 基本座標를 設定하는 것이기도 하다. 現在의 小作面積이 農地改革 때의 分配面積에 거의 肉迫하여 그의 成果가 烏有化된 傾向이 없지 않으나 所有形態別로 보면 小作農家は 아직 全農家の 5% 水準에 불과하다. 農地改革때의 小作農 比率이 40%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農地改革의 성과는 아직까지도 이 나라 農村의 經濟的 基調로 남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晩時之歎을 닛하기 이전에 現在의 事態가 더 惡化되지 않게 하기 위한 對應策이 時急하다. 따라서 農地改革事業은 지난날의 歷史整理인 동시에 앞으로 확립되어야 할 農地制度和 農政方向 設定의 出發點이기도 하다.

2. 農地改革史編纂小史

第 1 次試圖

農地改革史編纂이 公式的으로 發議된 것은 5. 16 革命 直後로서 1962. 11. 23 日字로 農地改革史編纂委員會規定이 閣令 第 1050 號로 公布되었다. 이 규정의 핵심부분인 第 1. 2 條는 다음과 같다.

第 1 條(設置) 農地改革史의 編纂에 關한 規定을 審議하고 農林部長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農林部에 農地改革史編纂委員會를 둔다.

第 2 條(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1 人과 10 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農林部次官이 된다.

③委員은 農林部の 關係職員과 農地改革에 關하여 學識, 經驗이 豊富한 者 中에서 農林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위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委員會委員 名單은 다음과 같다.

第 1 次 農地改革史編纂委員會 委員 및 補助員(括弧內)

(名單 無順)

委員長 金鍾大 農林部次官

委員 具在書 高大農大教授(李東鎬)

“ 金文植 서울大農大教授(朴洪範)

“ 金俊輔 全南大總長(張東燮)

“ 朴東昂 서울商大教授(朴玄採)

“ 俞仁浩 東國大教授(朴壽彬)

“ 趙東弼 高大教授(崔鍾軾 委員으로 交替되었음)

“ 朴根昌 中央大教授(李鍾燦)

“ 金鳳官 農林部次官補(曹信煥)

“ 崔朱喆 農林部 農地局長

“ 愼善撥 農林部 地政課長

同委員會의 第 2 次協議때에 各 委員別로 提示된 農地改革史編章構成案(會議錄에 保存된 것에 限함)은 다음과 같다.

【金鳳官委員案】

序 論

- 第 1 章 우리나라 土地制度의 史的考察
- 第 2 章 日帝下의 土地調查事業
- 第 3 章 美軍政과 土地政策
- 第 4 章 農地改革의 歷史的 背景
- 第 5 章 農地改革의 實施
- 第 6 章 農地改革의 意義
- 第 7 章 農地改革後의 土地制度
- 第 8 章 農地改革과 農業政策
- 第 9 章 農地改革의 評價
- 第 10 章 外國의 土地改革
- 第 11 章 今後의 農地制度

【金文植委員案】

第 1 編 우리나라 土地制度의 史的考察 (30 %)

第一章 高麗朝의 土地制度

- 1. 高麗初期의 土地制度
- 2. 高麗中葉의 土地制度
- 3. 高麗末葉의 土地制度

第二章 李朝의 土地制度

- 1. 李太祖 ~ 明宗까지의 田制
- 2. 宣祖以後의 田制
- 3. 舊韓國時代의 土地制度

第三章 日帝治下의 土地制度

- 1. 土地調查事業
- 2. 日帝治下의 小作制度

第四章 美軍政의 農地政策

- 1. 軍政前期의 農地政策
- 2. 軍政後期의 農地政策

第2編 韓國政府의 農地改革 (60%)

第一章 農地改革의 歷史的 意義

1. 韓國經濟構造의 特徵
2. 韓國農業의 構造的 特質
3. 農地改革의 意義

第二章 農地改革實施經緯

1. 農地改革法
2. 施行令其他
3. 事業着手
4. 地價補償

第三章 6.25 受難과 收復地區 農地改革

1. 6.25 受難과 農地改革事業
2. 收復地區 農地改革

第四章 農地改革法의 改正 및 其他의 補訂

1. 農地法 改正
2. 特別補償

第五章 農地改革事業의 評價

1. 農地改革事業의 不振
2. 農地改革事業의 實績
3. 農地改革後의 土地移動狀況
4. 農地改革後의 農業構造
5. 農地改革事業의 決算

第3編 今後의 農地制度 (10%)

第一章 各國의 農地改革

第二章 今後의 農地制度

【 具在書委員會案 】

第一章 序 論

1. 農地所有權의 起源과 그후의 變遷
2. 農地所有權의 歸屬과 分配
3. 農地政策의 諸形態

第二章 解放以前의 韓國土地制度의 史的考察

1. 高麗朝의 土地制度
2. 李朝의 土地制度
3. 日帝治下의 土地制度

第三章 美軍政下의 農地政策

第四章 農地改革의 實施

第五章 農地改革의 實績과 그 效果

第六章 諸外國의 農地改革

第七章 將來의 課題(今後의 農地制度)

【 朴東昂委員案 】

第一章 解放前(八·一五前) 農地制度 (100 枚)

第二章 美軍政下의 農地制度 (100 枚)

1. 解放直後의 農地所有關係
2. 美軍政의 農地政策

第三章 農地改革 (300 枚)

1. 農地改革의 必然性
2. 農地改革의 內容
3. 農地改革의 成果와 是非

第四章 農地改革後의 所有關係 (200 枚)

1. 農地所有의 集中
2. 農地占有와 所有關係의 調整

第五章 農地制度의 將來 (100 枚)

1. 各國의 農地制度
2. 農地制度의 將來方向

第六章 農地改革關聯資料 (?)

1. 改革時의 特殊資料
2. 改革後의 紛爭資料

【 俞仁浩委員案 】

第1編 農地改革以前の 農地制度 (25 %)

第一章 高麗朝의 土地制度

第二章 李朝의 土地制度

第三章 日帝下의 土地制度와 農林施策

1. 日帝下의 土地制度

2. 日帝下의 土地政策

第四章 美軍政下의 農地政策

1. 軍政과 農民

2. 軍政의 農地政策

第二編 農地改革의 經緯 (50 %)

第一章 農地改革을 必要로 한 社會經濟的 意義

第二章 農地改革을 必要로 한 政治的 意義

第三章 農地改革과 政治勢力

第四章 農地改革法의 內容

第五章 農地改革實施經緯

第六章 農地改革實施過程의 諸問題

第三編 農地改革 以後의 農地制度 (25 %)

第一章 農地改革의 實績

第二章 農地改革의 效果

第三章 農地改革이 派生시킨 社會經濟的 諸問題

【 朴根昌委員案 】

- | | |
|-------------------|----------|
| 1. 歷史的 意義 | (20 頁) |
| 2. 經濟的 意義 | (30 頁) |
| 3. 改革의 經過(發布되기까지) | (50 頁) |
| 4. 改革의 實施 | (50 頁) |
| 5. 改革의 成果 | (100 頁) |
| 6. 改革에 대한 再檢討 | (100 頁) |
| 7. 政策上으로서의 問題點 | (50 頁) |

8. 各國의 農地改革 (100 枚)

- A. 日 本
- B. 印 度
- C. 澳 國
- D. 臺 灣
- E. 中 共
- F. 北 韓 } 批判的으로
- G. 其 他

【 金俊輔委員案 】

1. 序 說
2. 解放前의 土地問題
 - (1) 「土地調查事業」以後의 土地制度
 - (2) 小作問題의 變遷
 - (3) 日帝의 土地政策
3. 軍政下의 土地政策
 - (1) 八·一五 解放과 韓國의 變貌
 - (2) 美軍政의 土地調整政策
 - (3) 各政黨 社會團體와 農地政策
 - (4) 第二次大戰 以後의 各國 農地改革
4. 農地改革法의 實施經緯
 - (1) 農地改革의 經濟的 意義
 - (2) 各種 農地改革立法案
 - (3) 農地改革法의 內容과 修正經緯
5. 農地改革過程의 諸問題
 - (1) 農地改革과 地主補償
 - (2) 農地改革과 生産農民
 - (3) 農地改革과 財政問題
 - (4) 農地改革制度의 展望

【最終確定案】（第3次協議，1962. 12. 26）

序 論

第一編 土地制度의 史的考察（具在書委員 500 枚）

第一章 高麗朝의 土地制度

第二章 李朝의 土地制度

第三章 日帝下의 土地制度

第二編 農地改革의 背景（金文植委員 300 枚）

第一章 解放後의 農地制度

第二章 農地改革의 必要性

第三編 農地改革의 實施（1,500 枚）

第一章 農地改革法制定

第二章 農地改革展開 }（金俊輔委員）

第三章 農地改革의 實績（金鳳官委員）

第四章 農地改革의 效果（崔鍾軾委員）

第四編 農地改革의 評價（1,500 枚）

第一章 農地改革의 社會經濟的 評價（朴根昌委員）

第二章 農地改革後의 土地所有關係（朴東昂委員）

第三章 農地制度의 方向（崔朱喆委員）

第四章 諸外國의 農地制度（金文植委員）

附 錄 農地改革關係資料（愼善揆委員 1,200 枚）

1. 改革時의 特殊資料

2. 改革後의 紛爭資料

3. 其他資料

以上과 같이 第3次協議（1962. 12. 26）에 따라 編章編成表 및 執筆分擔이 作成된 후 에 節款編成을 作成하여 1963. 1. 5 까지 제출토록 各委員에 通報되었다. 現在까지 農地局 地政課에 保管되어 있는 「農地改革史編纂委員會關係綴」에는 여러가지의 關係資料가 있을 뿐 1963. 1. 5 까지 提出키로 된 各委員의 節款編成表가 提示되지 않았다. 同委員會는 第3次協議를 마지막으로 하여 그 機能이 停止된 것이다. 이렇게 된 原因에는

記錄文書가 없으나 당시 地政課에서 同委員會의 庶務를 管掌하던 職員의 證言內容은 대략 다음과 같다.

당초 農林部의 方針은 作成되는 原稿에 대한 政府基準原稿料(200字原稿紙 枚當 50원 정도였다고 함)를 지급하되 研究助員에 대해서는 別途의 賃金を 支拂기로 되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第3次協議때에 各委員(教授)들로부터 대략 다음과 같은 意見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 ① 原稿料가 너무 싸다. 引上되어야 한다.
- ② 그렇지 않으면 編章別로 用役을 줄 것.
- ③ 一切의 關係資料는 農林部가 提示할 것.
- ④ 充分한 作業時間을 줄 것.

위의 條件에 대해 政府基準單價를 準用해야 하는 農林部로서는 原稿料引上이 不可能했고 原稿料豫算을 用役資金으로 轉用하기도 어려운 形便이었다. 아울러 農林部가 資料蒐集에는 協助할 수는 있으나 모든 資料를 能動的으로 챙겨줄 형편이면 直接作成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判斷한듯 하다. 게다가 各編章別로 重複되는 部分을 再調整하는 것도 큰 負擔인데다가 教授側의 態度가 극히 消極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農林部는 第3次 協議結果에 따라 節款編成表를 63.1.5 까지 제시하도록 通報했으나 回信이 全無함에 따라 同委員會는 自動的으로 瓦解되고 말았다. 原稿料를 둘러싼 흥정이 決裂됨에 따라 모처럼의 事業趣旨도 霧散되고 말았다. 지금부터 21年前인 1963年頃만하더라도 상당한 關係資料가 殘存했었음을 고려할 때 아까운 時期를 逸失한 셈이 되었다. 行政과 學問의 어느쪽 責任인지는 훨씬 後代의 史觀에서 考慮될 것이다. 결국 第1次 編纂試圖는 當代 一流級의 學者들에 의해 目次만을 남긴 채 아무 成果없이 流産되고 말았다.

第 2 次 試 圖

第1次試圖가 瓦解되고서도 歲月은 계속 흘렀다. 農林部의 地政擔當者는 계속해서 豫算鬭爭을 벌였으나 오히려 豫算擔當側으로부터 逆襲을 받는 형편이었다. 豫算을 세워주지 못해 未安하다는 것이 아니라 開發投資도 아닌 編修事業에 어떻게 豫算을 주느냐는 것이다. 이점은 우리나라 國家運營의 한 斷面을 엿보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農地改革史編纂委員會規定이 大統領令으로 公布된 이상 이것이 實現되려면 당연히 이에 所要되는 豫算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制度와 豫算의 乖離를 뜻하고, 大統領令이란 한낱 休紙에 불과하게 된다. 法治國

家の 紀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政府의 過去行績에 無責任하다는 것은 곧 過去의 行績으로 堆積되기 마련인 現實의 行爲에 無責任하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20여년을 끌어오면서도 事業報告書 하나 만들지 못한 農地改革史編纂事業이야말로 이러한 類의 代表的인 事例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豫算鬭爭으로 消日하다가 第2次로 編纂事業이 再論된 것은 1968年이었다. 豫算確保가 어려워지자 農地局은 農業用水開發事業調查費를 自己監督下에 있는 土地改良組合聯合會에 주어서 自體收入으로 잡게한 다음에 이것을 編纂事業에 投入하게 하는 便法을 생각해낸 것이다. 이러한 實質的인 意味의 豫算轉用問題를 비롯해서 農地改良事業과 그의 維持管理를 담당하는 農業土木團體가 農地改革史編纂事業에 資金을 낼 수 있으나에 대해서는 異論의 餘地가 없지 않다. 이에따라 1968. 9월에 農地局이 마련한 油印物資料(農地改革史編纂事業에 관하여)에 의하면 「農地改革史編纂事業과 土聯」이란 項目을 別途로 설치하여 關聯되는 法律을 廣意로 解釋하면 違法不當한 處事만은 아니라는 窮餘之說이 누누히 強調되어 있다. 第2次試圖는 바로 이러한 迂餘曲折 속에서 착수되었다.

이때의 計劃은 1968, 69年의 兩個年間に 걸쳐서 약 1천만원 가량을 投入하고 編纂委員도 再任命했다. 이때의 委員名單과 編章計劃은 다음과 같다.

第2次 農地改革史編纂委員會 委員名單

委員長	陳鳳鉉	農林部次官	
委員	姜辰國	前農地局長(建國後의 初代局長)	
〃	金鳳官	前農政次官補	
〃	金承燁	農地局長	
〃	金龍煥	農政次官補	
〃	朴基赫	延大商經大教授	
〃	愼善揆	前農地局地政課長	
〃	李英俠	建大教授	
〃	李啓純	農業振興公社 總裁	(가, 나, 다 順)

【編章計劃】

第1編 前 史

第1章 古代朝鮮에서 李朝까지의 土地制度

第1節 三國時代의 土地制度

第2節 高麗時代의 土地制度

第3節 李朝時代의 土地制度

第2章 日帝時의 土地制度

第1節 日政의 土地收奪政策과 資本主義의 侵透

第2節 土地私有制度의 確立

第3節 土地兼併의 推移와 小作制度의 弊習

第4節 地主階級의 橫暴과 小作農家의 慘狀

第5節 小作爭議와 民族運動에의 發展

第6節 小作調整의 諸樣相

第7節 自作農創設施策의 實效

第8節 氏族制度와 位土概念

第9節 寺院과 學園의 土地財團

第10節 王家의 宮庄土

第2編 第2次世界大戰 終息後의 土地改革에 關한 思潮

第1章 亞細亞地域에 있어서의 土地改革의 動向

第1節 日本의 土地改革

第2節 臺灣의 土地改革

第3節 東南亞地域의 土地改革

第2章 共產衛星國家地域의 土地改革

第1節 東歐地域의 土地改革

第2節 中共의 土地改革

第3節 北韓의 土地改革

第3編 農地改革의 搖籃期

第1章 解放後의 土地改革思潮의 물결

第2章 美軍政廳의 土地改革政策과 土地行政處의 歸屬農地 拂下政策

第3章 大韓民國政府 樹立과 立法過程

第1節 農地改革案과 地方公廳會

第2節 提案過程의 亂脈狀

第3節 國會에서의 討議過程

第4編 農地改革法の 立法과 公布

第 1 章 農地改革法案의 條文整理

第 1 節 第 1 次 國會通過分の 條文內容(1949. 4. 28 日)

第 2 節 第 2 次 國會通過(1949. 6. 21)와 公布

第 2 章 農地改革法の 大意

第 3 章 農地改革法 施行令 公布의 遲延과 農業協同組合法案의 停頓

第 5 編 農地改革의 實施

第 1 章 農家實態調査

第 2 章 農地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第 3 章 分配의 實施

第 1 節 6. 25 動亂으로 인한 事務的 受難

第 2 節 政府收復과 農地改革의 斷行

第 4 章 多年性植物栽培農地의 處分

第 5 章 買收의 概念과 買收除外에 關한 混亂

第 6 章 農地代價의 補償

第 1 節 住所地補償原則과 遞減率의 適用

第 2 節 物價上昇에 依한 土地證券의 價值下落

第 3 節 休戰으로 인한 失地의 補償

第 7 章 農地代價의 償還

第 1 節 農地代價의 査定과 現物償還

第 2 節 償還期間의 伸長

第 3 節 代金 또는 地價證券償還

第 4 節 償還額의 減免

第 5 節 現物償還에 따르는 償還額 精算

第 6 節 農地返還請求訴訟

第 8 章 特別補償

第 1 節 開墾干拓地의 特別補償

第 2 節 文教財團所有農地의 特別補償

第 9 章 農地附屬施設代價償還

第 1 節 第 1 次 補償要綱改正

第 2 節 關係法條文改正

第 3 節 第 2 次 補償要綱改正

- 第 4 節 附屬施設補償에 관한 訴訟
- 第 10 章 38 以北 收復地區의 農地改革
 - 第 1 節 關係法令의 整備
 - 第 2 節 買收分配의 相對者
 - 第 3 節 農地代價의 査定
- 第 11 章 農地改革에 관한 爭訴
 - 第 1 節 異議申請
 - 第 2 節 委員會의 調整
 - 第 3 節 訴 訟
- 第 12 章 分配農地地籍整理
 - 第 1 節 分 割
 - 第 2 節 地目變更
 - 第 3 節 新規登錄 合併整理
- 第 13 章 所有權登記移轉
 - 第 1 節 請求節次와 司法書士協會의 受任
 - 第 2 節 關係簿冊의 對照確認
 - 第 3 節 移轉登記
- 第 14 章 分配拋棄農地와 外國人耕作地
 - 第 1 節 拋棄農地
 - 第 2 節 外國人耕作地
 - 第 3 節 賃貸農地
- 第 15 章 地主轉業對策의 實施
- 第 16 章 農地賣買證明制度
- 第 17 章 犯法行爲에 對한 處罰
- 第 18 章 農地改革事業의 整理
- 第 19 章 農地改革法の 改正 및 關係法令의 大意와 改廢 過程

第 6 編 農地改革事業 特別會計에 의한 農地管理事業實施狀況

- 第 1 章 農地改良事業의 進展狀況
- 第 2 章 耕地整理事業의 推進現況(區劃整理, 地目變更, 交換分合等 事業)

第 7 編 農地改革事業의 評價

- 第 1 章 農地改革實施에 따르는 諸問題點

第2章 農地改革法施行의 功過

附 錄

- 가. 諸統計表
- 나. 年 表
- 다. 農地改革關係主要判例
- 라. 實談說話

원래 第2次試圖은 처음부터 學界와 地政實務者의 合同作業으로 推進할 計劃이 있거니와 위의 編制內容은 名目上 編纂委員會에서 作成된 것처럼 되어 있을 뿐, 실은 農地改革事業을 담당했던 曹信煥, 愼善揆, 全敬植氏등에 의해 作成된 것이라고 한다. 第1次試圖때에 大學教授들이 作成했던 目次案보다 엄청나게 實務內容에 精通해 있음을 알 수 있다. 學者그룹에서 이정도의 問題意識과 核心把握까지에는 상당한 資料檢査作業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위의 目次案에 뒤따라 關聯資料의 蒐集整理指針은 다음과 같았다.

資料蒐集整理事務施行指針

① 日帝時의 資料

東拓의 土地收奪政策 등을 取錄하기 위하여 各 銀行圖書室 및 各 圖書館藏書를 調査한다.

② 美軍政時의 資料

軍·過政, 美蘇共同委 等の 記錄 및 當時의 新聞社說 等を 調査蒐集한다.

③ 地方資料

㉠ 諸統計資料

㉡ 向後 農地制度에 대한 設問調査

㉢ 農地改革過程上的 特殊事例 蒐集

④ 中央資料

㉠ 內務, 財務, 文教部의 各部處 資料

㉡ 農林部內의 各種 資料

⑤ 農地改革法 制定時의 國會速記錄

⑥ 判例, 判決事例

⑦ 關聯機關의 機構, 人力, 關係者 名單

⑧ 東南亞, 東歐諸國의 農地改革事例

⑨ 其 他

한편 農地改革史編纂과 관련되는 實話, 秘話 및 關係資料의 應募試圖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農地改革을 前後한 時期에 있어서 그 地方의 農村, 農民動向

② 農地改革과 관련된 美談, 佳話, 秘話等

③ 農地改革實施에 困難했던 事例

④ 異例의으로 農地改革을 실시한 事例

⑤ 農地改革을 組織的으로 妨害했던 事例

⑥ 農地委員會의 決定事項이 異例의이거나 特異해서 社會的 問題를 야기시켰던 事例

⑦ 日帝時代의 小作爭議에 관한 事例

⑧ 農地改革實施前에 있었던 大地主의 農場經營事例

⑨ 土地制度和 관련된 記錄資料, 옛날의 土地文件等

이상과 같은 方針에 따라 農地改革法 制定을 둘러싼 國會速記錄이 蒐集되어 3,950매의 原稿가 作成되고, 398 件에 3,483 枚에 달하는 農地改革關係大法院判例資料가 마련되어 후에 公判되었으나 1945 年에서 49 年까지의 사이에 발표된 100 件의 新聞資料는 그후에 紛失되고 말았다. 한편 農地改革史의 本文은 農地改革法 制定때까지의 上卷만이 마련되어 公判되었으며 上卷의 目次內容은 다음과 같다.

【 農地改革史 上卷目次 】

序 論

第 1 編 歷代王朝의 土地支配形態와 田制改革

第 1 章 三國時代의 土地支配形態

第 2 章 統一新羅時代의 土地支配形態

第 3 章 高麗時代의 土地支配形態와 田制改革

第 4 章 李朝時代의 土地支配形態와 田制改革

第 2 編 日政時代의 土地政策

第 1 章 外國人의 土地所有權의 沿革과 日帝의 土地占奪

第 2 章 統 監 府

第 3 章 朝鮮土地調查事業

第4章 土地調査事業의 結果

第5章 日帝의 農業政策

第3編 農地改革의 立法經緯

第1章 第2次大戰後의 農地改革의 趨勢와 類型

第2章 解放直後의 農地改革思潮와 美軍政의 農地政策

第3章 南朝鮮立法議院의 土地改革方案

第4章 大韓民國政府의 農地改革法 立法過程

第5章 農地改革法의 改正

第6章 農地改革實施를 위한 準備

위의 3編中에서 8.15以前에 해당하는 農地制度史部分에 해당하는 第1,2編은 建國大學의 李英俠教授가 執筆하여 거의 無修正形態로 編纂委員會의 承認을 받았다. 그리고 解放以後에 해당하는 第3編은 第1代農地局長을 지냈던 姜辰國委員이 執筆했으나 委員會의 承認을 얻지 못하여 地政課實務陣들이 거의 全面的으로 再執筆된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1969年에 公刊豫定이던 上卷은 다음해인 1970年末에 간신히 出刊되었다. 결국 1968, 69年에 完了하리라던 第2次編纂試圖은 1年이 延期된데다가 上卷밖에 출간하지 못한채 終了되고 말았다. 이에따라 農地改革의 核心部門은 손도 제대로 대지 못한 채 계속해서 猶豫되고 말았다. 8.15以前의 前史部門은 주로 既存의 文獻史料에 의하게 되므로 作業이 비교적 容易할 수 있었으나 解放以後는 農地改革에 關聯되는 資料를 처음부터 蒐集해야 되므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第3次試圖

農業振興公社에 자금을 주어 農地改革史를 편찬하려던 第2次試圖은 『上卷』出刊만으로 일단락된 채 中斷되고 말았다. 다만,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農地改革法 制定을 둘러싼 國會速記錄과 農地改革關係大法院判例集이 油印形態로나마 刊行되었다. 이에 당시의 地政課는 農地改革史編纂原稿料를 豫算으로 일부 확보한 것을 奇貨로 해서 第3次的 編纂事業을 試圖했다.

당시 建國大學校의 李氣鴻教授는 農林部 農地局의 報償償還課長, 處分課長, 農地課長 등을 歷任한 경력이 있어서 農地改革業務에 實務經驗이 있는데다가 教授職으로 있게됨에 따라 李氣鴻教授 中心의 編纂作業이 구상됐다. 이에따라 李教授는 建國大學校 夜間部가 있던 樂園洞分校에 建大附屬農地問題研究所를 개설하여 5名程度の 助手를

雇傭했고 地政課에서는 農地改革關係의 一切資料를 貸出하여 그의 執筆을 의뢰했다. 이러한 體制에 의해 1971 년부터 약 2 년동안 作業이 進行되었다. 이때의 編纂目次는 다음과 같았다.

【 第 3 次試圖時의 編纂目次 】

第 1 章	農地改革實施를 위한 機構整備(160 枚)
第 2 章	農地와 農家(220 枚)
第 3 章	農地取得(780 枚)
第 4 章	農地의 評價(340 枚)
第 5 章	農地代價의 補償(800 枚)
第 6 章	農地分配(580 枚)
第 7 章	農地代價의 償還(900 枚)
第 8 章	分配農地의 地籍整理(370 枚)
第 9 章	38 以北 收復地區의 農地改革(300 枚)
第 10 章	農地의 保全과 管理(640 枚)
第 11 章	農地改革에 관한 爭訟(890 枚)
第 12 章	農地改革事業의 整備(300 枚)
第 13 章	農地改革事業의 財政(250 枚)
第 14 章	農地改革關係法令의 公布施行과 改廢經緯(180 枚)
總 計	 6,710 枚

近 2 年 동안의 작업끝에 總 6,710 枚의 原稿가 作成되어 原稿料도 支拂됐다. 이것을 접수한 農地局(地政課)은 出刊以前에 原稿를 정리하기 위해서 謄寫版으로 假製本을 作成했으나 原稿內容上의 不備로 인해서 第 1 章, 第 2 章, 第 5 章, 第 8 章, 第 13 章만이 간신히 整理되고 여타의 原稿는 文脈조차 연결되지 않아 손도 대지 못한 채 放置되고 말았다. 以上이 第 3 次試圖의 顛末이다.

3. 農地改革史編纂計劃(韓國農村經濟研究院:第4次試圖)

가. 研究內容 및 範圍

- 1) 韓·日合併으로부터 解放까지의 農地制度 變遷
- 2) 美軍政下의 農地制度와 歸屬農地 處理過程
- 3) 農地改革法 制定背景의 解明
- 4) 農地改革 推進過程
 - 分配農地 調査, 政府의 買收分配, 地價償還과 補償, 補償差額金의 農業投資, 農地改革과 관련된 一切의 事項
 - 收復地區의 農地改革
- 5) 農地改革에 의한 農村社會構造의 變化
- 6) 農地改革의 評價(그간의 研究總括)
- 7) 韓·中·日 三國의 農地改革 事業比較
- 8) 農地改革後의 農地推移
- 9) 北傀의 南韓地域 農地改革에 대한 調査

나. 調査研究方法

- 1) 關係文獻 調査
- 2) 關係文書蒐集 및 分類集計(償還臺帳 및 補償臺帳)
- 3) 國會速記錄 分析
- 4) 大法院의 農地關係 判例集 整理
- 5) 農地法制定 關係文書 및 新聞論調分析
- 6) 農地의 受配農家 및 舊地主層의 動向에 관한 追跡調査(事例研究)
- 7) 農地分配過程에서 심각한 紛糾가 발생되었던 地域의 事例研究
- 8) 關聯人事의 證言聽取

農地改革史編章計劃(試 案)

第一章 韓·日合併으로부터 8.15 解放까지의 農地制度 變遷

- 1) 統監部, 總督府의 土地政策
- 2) 朝鮮土地調査 事業

3) 自作農 創設計劃

第二章 美軍政下の 農地制度와 歸屬農地處理過程

- 1) 美軍政의 農地政策
- 2) 新韓公社
- 3) 過渡政府立法議院의 土地改革案

第三章 農地改革法制定 背景과 經過

- 1) 農地改革法의 立法過程
- 2) 農地改革法의 改正
- 3) 農地改革實施를 위한 準備

第四章 農地改革 實施過程

- 1) 農地取得과 分配
- 2) 農地代價補償과 償還
- 3) 分配農地의 地籍整理
- 4) 農地委員會와 農地調整
- 5) 農地改革事業의 財政
- 6) 收復地區의 農地改革
- 7) 農地改革事業整理

第五章 農地改革에 의한 農村社會構造의 變化

- 1) 解放直後('45 ~ '50)의 社會經濟構造
- 2) 農地改革에 의한 社會構造의 變化
 - ① 地主一小作 關係의 變化
 - ② 經濟秩序의 變化
- 3) 農地改革以後의 農村社會變化
 - ① 地主階層의 變化
 - ② 小作農民層의 變化
 - ③ 農村社會構造의 變化

第六章 農地改革의 評價

- 1) 農地改革의 評價를 위한 基準의 選擇
- 2) 農地改革에 對한 既存의 評價
- 3) 農地改革評價에 대한 再評價
- 4) 새로운 農地法 制定에 대한 政策的含蓄

第七章 韓・中・日 三國의 農地改革事業 比較

- 1) 韓・中・日 農地制度變遷
- 2) 農地改革前後의 社會經濟的背景
- 3) 農地改革法 制定背景과 經過
- 4) 農地改革實施節次 및 過程
- 5) 農地改革의 成果
- 6) 農地改革의 問題點
- 7) 農地改革 重要法規比較

第八章 農地改革後의 農地推移

第九章 北傀의 南韓地域 農地改革에 대한 調查

- 1) 南韓에 대한 農地改革動機
- 2) 農地改革의 方法
- 3) 農地改革에 따른 問題點

附 錄

農地改革關係資料目錄

(例規：通牒編)

- ① 總 括
- ② 評 價 · 買 收
- ③ 地 主 轉 業 幹 旋
- ④ 農 地 委 員 會
- ⑤ 分 配 · 分 配 除 外
- ⑥ 農 地 代 價 補 償
- ⑦ 農 地 代 價 償 還
- ⑧ 多年性植物栽培農地
- ⑨ 農 地 附 屬 施 設
- ⑩ 三八以北 收復地區
- ⑪ 地 籍 整 理
- ⑫ 訴 訟
- ⑬ 管 財

빈

면

① 總 括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1-1	49. 5. 20	農地第 303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村實態調査에 관한 件
1-2	50. 2. 3	" 114"	"	"	農地小票取扱에 관한 件
1-3	" 4. 3	" 339"	"	"	農地改革法實施에 관한 件
1-4	" 5. 10	" 339"	"	"	農地改革實施에 관한 件
1-5	" 5. 23	" 681"	"	"	各道農地課長會議開催에 관한 件
1-6	" 10. 19	" 3"	"	"	農地改革實施 及 臨時措置의 件
1-7	51. 3. 14	" 121"	"	"	農地改革實施 及 臨時措置에 관한 件
1-8	" 6. 18	" 622"	"	"	農地改革事務推進에 관한 質疑의 件
1-9	52. 1. 21	" 104"	農 林 部 長 官 農地改革法施行令第 40 條에 依한 耕作料에 관한 件	"	農地改革法施行令第 40 條에 依한 耕作料에 관한 件
1-10	" 4. 13	" 737"	農 林 部 長 官 歸屬農地管理局地方機關廢合에 隨伴하는 業務引繼에 관한 件	"	歸屬農地管理局地方機關廢合에 隨伴하는 業務引繼에 관한 件
1-11	" 4. 16	内地第 " "	內 務 部 長 官 歸屬農地管理局地方機關의 廢合에 관한 件	"	歸屬農地管理局地方機關의 廢合에 관한 件
1-12	" 4. 30	忠 北 農地第 197"	忠 北 內務產業局長	市 長, 郡 守	歸屬農地管理局地方機關의 廢合에 관한 件
1-13	" 5. 10	田處第 125"	歸農大田地方局長	忠 北 知 事	歸屬農地管理局地方機關廢合에 隨伴한 事務引繼의 件
1-14	" 5. 15	農地第 949"	農 地 管 理 局 長	各道產業局長	統合에 隨伴한 事務處理에 관한 件
1-15	" 5. 16	法制 2 第 100"	法 制 處 長	農 林 部 長 官	農地改革法第 2 條의 農地規定에 관한 質疑의 件
1-16	" 6. 24	農地第 1,200"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歸屬農地管理局事務引繼書 提出의 件
1-17	" 7. 7	忠北地政第 92"	忠 北 知 事	內 務 部 長 官 農 林 部 長 官	歸屬農地管理局 事務引繼書 提出의 件
1-18	53. 7. 29	農地第 "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補償과 償還의 對照事務實施에 관한 件
1-19	" 9. 1	" "	農 地 管 理 局 長	各道產業局長	補償과 償還의 對照事務實施에 관한 件
1-20	" 12. 30	" "	"	"	補償과 償還의 對照事務實施에 관한 件

資 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1-21	54. 4. 14	農地第 號	農地管理局長	各道產業局長	補償과 償還의 對照事務實施에 관한 件
1-22	55. 1. 14	" 83 "	" "	" "	補償과 償還의 對照事務實施에 관한 件
1-23	" 8. 20	" 2048 "	" "	" "	補償과 償還의 對照事務促進에 관한 件
1-24	51. 1. 12	法務第 1389 "	法 務 部 長 官	農 林 部 長 官	農地改革法解釋에 관한 件
1-25	57. 5. 13	舊財總第 190 "	舊皇室財産事務 總 局 長	各 道 知 事	舊皇室農地取扱에 관한 件
1-26	" 7. 2	農地第 "	農 林 部 次 官	" "	補償과 償還의 對照事務促進에 관한 件
1-27	" 11. 29	" "	" "	京 畿 知 事	農改法第 17 條違反農地の 處理에 관한 件
1-28	58.10. 7	농지제 1919호	농 립 부 차 관	각 도 지 사	임대농지경작료조정에 대한 질의의 건
1-29	59. 8. 28	" 3508 "	" "	" "	농지매매에 수반하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서발급에 관한 건
1-30	61. 2. 8	農地第 437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改革事業整理에 관한 未處理農地調査의 件
1-31	" 6. 29	" 437 "	" "	財 務 部 長 官	國有農地 引繼에 관한 件
1-32	62. 9. 11	농농지 2436호	농 립 부 장 관	각 도 지 사	농지개혁법관계민원서류 간소화
1-33	63. 1. 18	농지정 1141.12-	" "	" "	도시계획법적용에 관한 질의
1-34	" 3. 14	" 1141. 2- 695	" "	"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개정
1-35	" 6. 25	" 1141.32- 2451	" "	" "	농지매매증명사무절차
1-36	64. 3. 25	" 1141.32- 1377	" "	" "	지정 사무에 대한 질의
1-37	" 9. 24	" 114131- 5899	" "	" "	농지매매증명발급
1-38	65.11. 18	" 1141.32- 5904	" "	경 북 지 사	농지매매증명발급에 대한 질의
1-39	67. 7. 4	" 1141.32- 2379	" "	" "	농지매매증명발급에 대한 질의
1-40	68. 4. 30	지정 1141 -2774	" "	각 도 지 사	농지개혁사업 각종통계 확립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1-41	68. 7. 4	지정 1141.32-4069	농 립 부 장 관	각 도 지 사	특조법제 9 조의 양도농지과세에 대한 질의
1-42	69. 2.20	" 1141.12 - 580	"	경 북 지 사	자경농지매매증명발급에 대한 질의
1-43	70.11.24	" 1141 -3285	"	각 도 지 사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에 대한 질의

② 評價・買收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2-1	50. 1. 21	農地第 63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買收農地評價要領制定에 관한 件
2-2	" 2. 8	" 126 "	"	"	各道 田・畝等級別賃貸價格 及 平均收穫量表
2-3	" 3. 25	" 234 "	"	"	中級農地査定要領에 對한 異議의 件
2-4	" 3. 30	" 316 "	"	"	特殊地區農地買收・評價에 관한 件
2-5	" 4. 13	" 388 "	"	"	中級農地査定에 관한 件
2-6	" 4. 14	" 389 "	"	"	賃貸價格없는 農地의 評價에 관한 件
2-7	" 6. 7	" 796 "	"	"	共通倍率告示에 관한 件
2-8	" 11. 19	" 8 "	"	"	都市區域內 農地의 共通倍率決定에 관한 件
2-9	" 11. 30	" "	"	"	買收農地에 設定된 諸債權申請에 관한 件
2-10	" 12. 22	" 113 "	"	"	共通倍率告示에 관한 件
2-11	51. 1. 29	" 18 "	"	"	都市區域內 農地의 共通倍率決定에 관한 件
2-12	" 3. 7	" 95 "	"	"	共 通 倍 率 算 定 基 礎 穀 種 別 換 算 에 관 한 件
2-13	" 6. 18	" 111 "	"	"	特殊地區農地買收評價에 관한 件
2-14	" 9. 24	" 929 "	"	"	共通倍率改正에 관한 件
2-15	52. 4. 15	" 601 "	"	"	農地改革法第 7 條第 1 項第 3 號規定의 時價限界에 관한 件
2-16	" 9. 18	" 1,318 "	"	"	鎭藥毒地帶特殊農地共通倍率決定에 관한 件
2-17	" 9. 30	" 2,488 "	"	"	共通倍率訂正에 관한 件
2-18	" 10. 2	" 248 "	"	"	共通倍率訂正에 관한 件
2-19	53. 3. 25	" 651 "	"	"	共通倍率改正에 관한 件
2-20	" 9. 24	" 590 "	"	"	共通倍率改正에 관한 件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備 考
2-21	53. 10. 6	農地第 590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共通倍率改正에 관한 件	
2-22	" 12. 4	" 2,968 "	" "	" "	特殊地區共通倍率決定에 관한 件	
2-23	58. 10. 5	농지 제 960호	농 립 부 차 관	각 도 지 사	특수지구농지공통배율결정의 건	
2-24	59. 5. 5	" 1,240 "	농 립 부 장 관	경 북 지 사	특수지구농지매수·평가에 관한 건	
2-25	" 7. 1	" 2,124 "	농 립 부 차 관	전 북 지 사	도시지구공통배율인허농지의 15 할 지구환원인허신청의 건	

③ 地主轉業幹旋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備 考
3-1	49. 11. 22	內地第 794號	內 務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改革法實施에 隨伴한 地主轉業幹旋에 관한 件	
3-2	50. 5. 11	農地第 374"	農 林 部 長 官	"	農地改革에 隨伴한 地主轉業幹旋에 관한 件	
3-3	" 5. 15	" 577"	"	各 部 處 長 官 管 財 廳 長	地主轉業幹旋에 관한 件	
3-4	" 5. 26	" 708"	"	各 道 知 事	農地改革法實施에 隨伴한 地主轉業幹旋에 관한 件	
3-5	" 6. 10	" 558"	"	"	地主轉業幹旋에 관한 件	
3-6	" 6. 20	" 840"	"	"	各級農地委員會의 分科委員會構成에 관한 件	
3-7	" 12. 2	" 57"	"	"	地主轉業幹旋에 관한 件	
3-8	51. 2. 20	" 69"	"	"	地主轉業幹旋에 관한 件	
3-9	" 9. 4	" 945"	"	"	歸屬財產處理法 施行令中 改正의 件	
3-10	" 9. 8	" 677"	"	"	歸屬財產處理法施行令 第29條의 2에 依한 歸屬企業體 賃借人 및 管理人推薦規程公布의 件	
3-11	" 9. 10	" 1037"	"	"	歸屬企業體管理人 및 賃借人推薦事務取扱에 관한 件	
3-12	" 10. 25	" 1229"	"	"	歸屬企業體管理人 및 賃借人推薦事務取扱에 관한 件	
3-13	52. 2. 13	" 287"	"	"	地主轉業幹旋에 관한 件	
3-14	" 3. 28	" 461"	"	"	歸屬企業體管理人 選任期限에 관한 件	
3-15	" 3. 29	" 629"	"	"	地主轉業幹旋에 관한 件	

④ 農地委員會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4 - 1	50. 4. 6	農地第 341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委員會 委員委屬에 관한 件
4 - 2	" 4.18	" 402 "	"	"	農地委員會 運營에 관한 件
4 - 3	51. 5.19	" 461 "	"	"	分配農地調停事務取扱에 관한 件
4 - 4	57. 9. 2	農地第 2610 "	農 林 部 次 官	忠 南 知 事	農地異議申請期間에 관한 質疑의 件
4 - 5	63. 12.13	농지정 1141.13 - 4940	농 립 부 장 관	각 도 지 사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

⑤ 分配・分配除外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5-1	50.2.24	農 地 第 114 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家別 分配農地一覽表 作成에 관한 件
5-2	" 3. 9	" 114 "	"	"	耕作者別 農地一覽表 作成에 관한 件
5-3	" "	" 235 "	"	"	耕作者別 農地一覽表 從覽에 관한 件
5-4	" 3.17	" 215 "	"	"	耕作者別 農地一覽表의 地主取扱에 관한 件
5-5	" 3.22	" 290 "	"	"	農地分配 通知에 관한 件
5-6	" 4. 3	" 317 "	"	"	農地改革 施行에 관한 件
5-7	" 4.13	" 373 "	"	"	農地改革法「第 17 條 1 號」規定 取扱에 관한 件
5-8	" 4.20	" "	"	"	農地改革實施에 관한 件
5-9	" 4.22	" 339 "	"	"	農地改革 實施에 관한 件
5-10	" 4.26	" 339 "	"	"	農地改革實施에 관한 件
5-11	" 4.27	" 465 "	"	"	苗圃用地 確保에 관한 件
5-12	" 4.27	" 480 "	"	"	國有農地 調査報告에 관한 件의 件
5-13	" 4.28	歸農事第 153 "	"	"	歸屬牧場附屬 農地 及 放牧地에 관한 件
5-14	" 5. 4	農 地 第 465 "	"	"	苗圃用地 確保에 관한 件
5-15	" 5. 5	" 546 "	"	"	農地改革 實施에 隨伴하는 各種申請 및 認許節次에 관한 件
5-16	" 5. 9	歸農處第 280 "	歸屬農地管理局長	歸農地方局長	農地改革法 第6條1項4號 및 6號 申請接收提出에 관한 件
5-17	" 5.11	" 408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改革法 實施에 관한 件
5-18	" 5.13	農 地 第 608 "	"	"	認許(確認) 事務 取扱要領에 관한 件
5-19	" 5.15	" 605 "	"	"	農地改革法 第 6 條項第 4 號 5 號 및 第 6 號 規定에 依한 農 地의 認許 또는 認定事項 取扱에 관한 件

資 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5-20	50.5.19	農地第 646 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改革에 隨伴하는 農地改良事業水利施設敷地 認許 申請 에 관한 件
5-21	" 5.20	" 315 "	"	"	農地改革 實施에 관한 件
5-22	" 6.13	" 787 "	"	"	都市計劃地內의 農地使用目的 變更申請의 件
5-23	" 6.20	" 834 "	"	"	舊王宮所有 農地 取扱에 관한 件
5-24	51.2. 8	" 34 "	"	"	鐵道用地 認許 事務取扱에 관한 件
5-25	" 3.19	" 140 "	"	"	認許(確認) 事務取扱에 관한 件
5-26	" 3.28	" 34 "	"	"	鐵道用地 認許 事務取扱에 관한 件
5-27	" 4. 3	" 192 "	"	"	河川敷地 分配에 관한 件
5-28	" 4.25	" 251 "	"	"	認許(確認) 事務取扱에 관한 件
5-29	" 4.26	" 312 "	"	"	開墾及 干拓農地 分配에 관한 件
5-30	" 6.16	" 534 "	"	"	認許(確認) 事務 取扱要領에 관한 件
5-31	" "	" 614 "	"	"	鐵道用地 認許 事務 取扱에 관한 件
5-32	" 6.29	" 639 "	"	"	果樹園桑田等の 形態를 構成치 않은 分配農地の 果木桑木等 의 處理에 관한 件
5-33	" 8. 6	" 728 "	"	"	農地改革關係 認許(確認) 事務 取扱要領에 관한 件
5-34	52.3.31	" 635 "	"	서울特別市長	分配保留 및 假償還 措置한 農地處理에 관한 件
5-35	" 4.28	" 734 "	農地管理局長	各 道 知 事	農地改革實施에 關한 質疑의 件
5-36	" "	" 544 "	"	"	農地改革法 第 19 條에 依한 受配農地返還에 관한 件
5-37	" 6. 5	" 1,174 "	農 林 部 長 官	"	農地改革法 實施에 관한 質疑의 件

資 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5-38	52. 7. 11	農地第1,561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歸屬 干拓地管理 運營에 관한 件
5-39	" 8. 9	" 1,706 "	"	"	開墾 및 干拓農地 分配에 對한 質疑事項에 관한 件
5-40	" 8. 12	" 1,980 "	"	"	農地改革法 第 6 條第 1 項 4 號 規定認許 事務 및 農地委員會 委屬事務取扱에 관한 件
5-41	" 9. 18	" 1,886 "	"	서 울特別市長	認許農地 事務 取扱에 관한 件
5-42	" 10. 3	" 1,883 "	"	各 道 知 事	歸屬 財産管理 限界에 관한 質疑의 件
5-43	" 11. 11	" 1,787 "	"	"	河川敷地 分配에 관한 件
5-44	53. 3. 6	" 5 "	"	"	外國人土地 所有權 및 永小作權에 관한 件
5-45	" 7. 6	" 1,764 "	"	"	寺刹自耕農地 調査報告에 관한 件
5-46	" 9. 14	" 1,811 "	"	"	拋棄한 分配農地 處理에 관한 質疑의 件
5-47	" 10. 6	" "	"	"	國有林野 境界內 分配農地 事務 取扱에 관한 件
5-48	53. 10. 12	" 1,811 "	"	"	農地分配에 관한 質疑의 件
5-49	" 12. 15	" 121 "	法 制 處 長	京 畿 知 事	分配農地에 對한 取得稅 賦課에 관한 件
5-50	54. 10. 30	" 1,953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舊皇室 所有農地 分配에 관한 件
5-51	" 12. 16	" "	"	"	自耕農地 確認 및 土地引渡 判決에 관한 件
5-52	56. 2. 20	" "	農 林 部 次 官	"	分配對象農地로서 分配漏落된 農地の 追加分配에 관한 質 疑의 件
5-53	" 4. 23	" "	"	"	位土賣買行爲의 可否에 對한 質疑에 관한 件
5-54	" 6. 1	" "	"	慶 北 知 事	農地改革法 實施에 對한 質疑의 件
5-55	" 9. 12	" 1,886	農 林 部 長 官	"	寺刹自耕農地 確認 農地處理에 關한 件

資料 番號	施行 年月日	文書番號	發信機關	受信機關	題 目
5-56	57. 1. 31	農地第 233號	農林部次官	各道知事	特殊使用認許 農地에 對한 耕作料 調整에 關한 件
5-57	" 3. 29	" 1, 217 "	"	"	軍用地로서의 農地使用制限 緩和 要請에 關한 件
5-58	" 4. 7	" 1, 216 "	農林部長官	"	農地改革法 第6條의 認許 및 確認 事務取扱에 關한 件
5-59	" 4. 25	" 1, 216 "	"	"	農地改革法 第6條의 認許 및 確認 事務取扱에 關한 件
5-60	" 5. 29	" "	農林部次官	京畿知事, 全北知事	訴訟에 依하여 返還 받은 分配農地의 再分配에 關한 件
5-61	" 5. 30	" "	"	各道知事	位土認許에 對한 質疑의 件
5-62	" 5. 31	" "	"	"	農地改革法 運用에 對한 質疑의 件
5-63	" 8. 10	" 2, 404 "	農林部長官	"	受配農家の 無斷離農으로 因한 農地處理에 關한 質疑의 件
5-64	" 8. 12	" 2, 332 "	農林部次官	京畿道知事	公共用地로 編入된 分配 保留農地 事務取扱에 關한 件
5-65	" 9. 29	" 2, 457 "	"	全南知事	事務錯誤로 因하여 分配된 農地의 取消節次에 對한 質疑의 件
5-66	58. 9. 6	농지제 1, 549 호	농림부차관	각도지사	농지 일시 보류인허 신청사무 취급에 대한 질의의 건
5-67	" 9. 8	" 2, 182 "	"	경남지사	반환농지 처리에 대한 질의의 건
5-68	59. 3. 30	" 226 "	"	각도지사	사용목적 변경 인허농지 처리에 관한 건
5-69	" 4. 2	" 485 "	농림부장관	전남지사	사찰 자경농지 확인에 관한 건
5-70	" 4. 9	" 834 "	농림부차관	"	농지 신규(新規) 분배에 대한 질의의 건
5-71	" 5. 5	" 1, 833 "	"	각도지사	반환농지 재분배 처리의 건
5-72	" 5. 13	" 764 "	"	충남지사	농지분배에 대한 질의의 건
5-73	" 6. 13	" 2, 473 "	농림부장관	각도지사	사용목적 변경 인허농지 처리에 관한 건
5-74	" 10. 23	" 3, 842 "	농림부차관	"	사용목적 변경 인허농지 처리에 관한 건
5-75	" 11. 28	" 2, 666 "	"	"	국유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의 건

資 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5-76	59. 11. 30	농지제 3,625 호	농 립 부 차 관	각 도 지 사	분배 포기농지에 대한 질의의 건
5-77	" "	" 3,962 "	"	경 북 지 사	농개법 제 15조 및 제 19조 제 1 항에 관한 질의의 건
5-78	" 12. 29	" 1,590 "	"	경 기 지 사	은행재산매각에 대한 질의의 건
5-79	60. 2. 13	" 436 "	농 립 부 장 관	각 도 지 사	농지분배 및 다년성 식물 재배농지 처리에 관한 건
5-80	" 3. 19	" 696 "	농 립 부 차 관	"	외국인 경작농지 처리에 관한 건
5-81	" 5. 4	" " 865 "	"	"	농지분배에 대한 질의의 건
5-82	" 5. 20	" 1,480 "	농 립 부 장 관	"	분배 농지부 설치 및 기본통계 정비에 관한 건
5-83	61. 10. 8	" "	"	"	농지분배 및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처리에 관한 건
5-84	" 12. 30	" 6,633 "	"	"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 상속세
5-85	64. 4. 7	농지정 1141.41-1615 "	"	"	폐기처리된 분배농지 관리에 대한 질의
5-86	" 10. 19	" 1141.1-6282 "	"	경 북 지 사	위토 취소에 대한 질의
5-87	65. 6. 5	" 1141.32-2650 "	"	"	위토 농지관리에 대한 질의
5-88	66. 3. 9	" 1141.12-1359 "	"	"	폐기농지 사후처리에 대한 질의
5-89	68. 4. 23	" 1141.1-2594 "	"	각 도 지 사	위토 관리에 대한 질의
5-90	69. 2. 20	" 1141.1-581 "	"	"	폐기농지 처리
5-91	" 6. 26	" 1142-2365 "	"	"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대한 질의
5-92	" 12. 8	" 1141.1-4294 "	"	"	농지개혁법 운영에 대한 질의

⑥ 農地代價補償

資料 番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6-1	50. 4. 14	農地 第 390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 確認事務 取扱에 관한 件
6-2	" 4. 20	" 490 "	"	"	補償申請書 取扱에 관한 件
6-3	" 5. 5	" 537 "	"	"	農地 補償申請 提出 期限에 관한 件
6-4	" 5. 11	" 554 "	"	"	補償申請書 事務 取扱에 관한 件
6-5	" 5. 12	" 604 "	"	"	地主 補償申請에 관한 件
6-6	" 5. 15	" 540 "	"	"	地主 補償申請에 관한 質疑의 件
6-7	" 6. 5	" 765 "	"	"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6-8	" 11. 15	" 48 "	"	"	補償申請 手續 要領에 관한 件
6-9	" 12. 2	" 82 "	"	"	補償事務 取扱 要領에 관한 件
6-10	" 12. 20	" 82 "	"	"	補償事務 取扱 要領에 관한 件
6-11	51. 1. 9	" 1 "	"	"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6-12	" 1. 14	" 6 "	"	"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6-13	" 1. 31	" 31 "	"	"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6-14	" 2. 9	" 42 "	"	"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6-15	" 2. 15	" 68 "	"	"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6-16	" 2. 16	" 45 "	"	"	農地代價 補償에 對한 遞減率 規定 公布에 대한 件
6-17	" 2. 23	" "	"	"	地主承認 申請에 관한 件
6-18	" 3. 8	" 179 "	"	"	地價證券 關係 事務 取扱 內規制定에 관한 件
6-19	" 3. 11	" 115 "	"	"	地價證券 補償金 支拂指令 交付에 관한 件
6-20	" 4. 28	" 243 "	"	"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6-21	51. 6. 4	農地第 528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地價證券 預金으로 官有物 및 歸屬財産購入代金 充當에 관한 件
6-22	" 6. 18	" 622 "	"	"	農地改革 事務推進에 관한 質疑의 件
6-23	" 7. 25	農地第 567 "	農 林 部 長 官 管 財 廳 長	各 道 知 事 各道管財局長 殖産銀行長	地價證券으로 賣渡代金 入札保證金 充當에 관한 件
6-24	" 8. 20	農地第 894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文教財團 地價證券 交付에 관한 件
6-25	" 8. 24	" 773 "	"	"	農地改革法 第9條에 의하여 辨濟한 債務額支拂事務 取 扱에 관한 件
6-26	" 9. 12	" 1,058 "	"	"	共同各義者에 對한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6-27	" 10. 18	" 1,284 "	"	"	地價證券 關係事務 取扱 內規 一部改正에 관한 件
6-28	" 11. 12	" 1,468 "	"	"	地價證券으로 歸屬財産賣渡代金を 納付하였을 경우의 歲 入額認定에 관한 件
6-29	" 12. 8	" 1,576 "	"	"	地價證券으로 歸屬財産賣渡代金を 納付하였을 경우의 歲 入額認定에 관한 件
6-30	" 12. 25	" 1,631 "	"	"	文教財團所有農地 特別補償法에 의한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6-31	" 12. 30	" 1,675 "	"	"	地價證券으로서 歸屬財産賣渡代金を 納入하였을 경우의 歲入額認定에 관한 件
6-32	52. 1. 10	農經第 45 "	農 林 部 長 官 財 務 部 長 官 管 財 廳 長	各 道 知 事 各道管財局長	農地證券 補償金 全額으로 賣却代 及 入札保證金에 充當한 경우 事務取扱 節次에 관한 件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6-33	52. 1. 19	農地 第120號	農 地 局 長	各道產業局長	地價證券으로서 歸屬財産賣却代金を 納付하였을 경우의 歲入額認定에 관한 件
6-34	" 3. 17	" 537 "	"	"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6-35	" 3. 22	" 580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地價證券 住所變更事務 取扱에 관한 件
6-36	" 3. 28	" 628 "	農 地 局 長	"	補償金 支拂指令書 作成에 관한 件
6-37	" 3. 28	" 602 "	農 林 部 長 官	"	過拂된 地價證券의 是正方法에 관한 件
6-38	" 3. 29	" 627 "	"	"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6-39	" 4. 28	" 800 "	"	各 道 知 事 管 財 廳 長	歸屬財産賣却代金으로 收納된 地價證券의 4283 年度分 補 償金 支拂節次에 관한 件
6-40	" 5. 17	" 974 "	"	各 道 知 事	地價證券 分割事務 取扱에 관한 件
6-41	" 9. 18	" 1,778 "	"	"	歸屬財産賣却代金納付에 充當된 地價證券併合事務 取扱에 관한 件
6-42	" 10. 9	" 2,721 "	"	"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6-43	" 10. 10	" 2,757 "	農地管理局長	各道產業局長	歸屬財産賣却代金納付에 充當된 地價證券 併合事務 取扱 에 관한 件
6-44	" 12. 22	" 3,414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錯誤發給된 地價證券의 是正方法에 관한 件
6-45	53. 1. 3	" 62 "	"	"	地價證券 再交付에 관한 件
6-46	" 1. 10	" 99 "	"	"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6-47	" 2. 23	" 568 "	"	"	地價證券關係事務 取扱內規 改正에 관한 件
6-48	" 3. 20	" 820 "	"	"	錯誤發給된 地價證券의 是正方法에 관한 件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6-49	53. 5. 1	農地 第 1,472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歸屬財產賣却代金納付에 充當된 地價證券併合事務 取扱에 관한 件
6-50	" 5.18	" 153 "	" "	" "	地價證券으로 賣却代金 및 入札保證金에 充當할 경우 事務 取扱節次에 관한 件
6-51	" 5.20	管經 第 394 "	農 林 部 長 官 管 財 廳 長	各 道 知 事 各 道 管 財 局 長	歸財入札保證金 및 賣却代로 納付하는 地價證券收納事務 取 扱에 관한 件
6-52	" 5.27	管理 第1,449 "	管 財 廳 長	各 道 知 事	聯合國人 所有農地 處理에 관한 件
6-53	" 6.18	" 1,444 "	" "	" "	聯合國人 所有農地 處理에 관한 件
6-54	" 6.24	農地 第1,803 "	農 林 部 長 官	" "	地主住所 및 地價證券 名義變更 事務取扱에 관한 件
6-55	54. 5. 5	" 691 "	" "	" "	歸屬財產賣却代金 納付에 充當된 地價證券 併合事務 取扱에 관한 件
6-56	" 5.18	管理 第 "	文 教 部 長 官 農 林 部 長 官 管 財 廳 長	各 道 知 事 各 道 管 財 局 長	地價證券 事故防止에 관한 件
6-57	" 6.17	農地 第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歸屬財產賣却代金納付에 充當된 地價證券 併合事務 取扱에 관한 件
6-58	55. 1.24	" 259 "	" "	" "	地價證券 事務取扱에 관한 件
6-59	" 3. 3	" 491 "	" "	京 畿 道 知 事	未入住地區의 買收農地 代價補償에 관한 件
6-60	" 3.28	" 660 "	" "	各 道 知 事	歸屬財產賣却代金으로 收納하는 地價證券 名義變更에 관한 件
6-61	" 7.19	" "	" "	" "	文教財團等 所有地價證券 再確認에 관한 件
6-62	" 9. 3	" 2,126 "	" "	" "	4286 年分 農地代價 補償金支拂 指令에 관한 件
6-63	56. 1.24	" 234 "	" "	" "	地價證券 精算에 관한 件

資 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6-64	56. 4. 14	農地 第 983 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地價證券 分割 事務取扱에 관한 件
6-65	" 4. 24	" 721 "	"	京 畿 知 事	38 線 接境(以南) 地區 農地代價 補償에 관한 件
6-66	" 9. 5	" "	"	各 道 知 事	未收復地區에 編入된 農地の 地價補償에 관한 件
6-67	" 10. 6	" 1,163 "	"	"	農地改革法에 의하여 買收당한 開墾及 干拓農地特別補償에 對한 遞減率適用與否에 관한 件
6-68	" 11. 15	" "	"	"	過拂된 地價證券 精算에 관한 質疑의 件
6-69	57. 1. 21	" "	"	"	農地代價 補償金 支拂에 관한 件
6-70	" 1. 28	" 170 "	"	"	農地代價 補償金 支拂에 관한 件
6-71	" 5. 27	" 1,873 "	"	"	特別補償對象農地에 對한 特別補償措置의 件
6-72	" 8. 5	" 2,237 "	"	"	地價證券 事務取扱에 對한 質疑의 件
6-73	" 12. 21	" 4,068 "	"	"	特別補償對象農地에 對한 補償措置의 件
6-74	58. 1. 24	농지 제 271 호	농 립 부 장 관	각 도 지 사	농지대가보상금 지불에 관한 건
6-75	" 2. 21	" "	"	"	지가증권 사무취급에 관한 질의의 건
6-76	" 11. 18	" 3,595 "	"	"	지가증권으로 귀속재산 매각대 및 입찰보증금에 충당할 경우 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한 건
6-77	59. 11. 24	" 4,175 "	"	"	공유농지에 대한 지가증권 지분발급에 관한 건
6-78	" 12. 23	" 3,075 "	농 립 부 차 관	"	지가증권 발급사무청산 및 다년성 식물재배농지 증권발급에 관한 건
6-79	60. 3. 22	" 856 "	"	"	지가증권 사무취급 내규 일부개정의 건
6-80	" 5. 23	" 7,520 "	"	"	농지대가 보상 사무정비계획에 관한 건

資料 番號	施行 年月日	文書番號	發信機關	受信機關	題 目
6-81	60. 9. 6	농지 제2,239호	농 립 부 차 관	각 도 지 사	지가증권 발급에 관한 질의의 건
6-82	61. 5. 18	" 1,562 "	농 립 부 장 관	"	국유농지대상 보상에 관한 건
6-83	" 5. 25	" 1,970 "	농림부사무차관	"	지가증권 과오불액 회수처리에 관한 건
6-84	" 6. 8	" 686 "	농림부사무차관	"	지가증권 사무취급에 관한 질의의 건
6-85	" 6. 19	" 2,350 "	농 립 부 장 관	"	4293년도 법정 보상가격 통지의 건
6-86	" 9. 12	" 3,684 "	"	"	분배농지의 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건
6-87	" 10. 10	" 3,777 "	"	"	지가증권 사무취급에 대한 질의
6-88	" 11. 11	" 3,303 "	"	"	농지대가 미보상액 일체정비
6-89	62. 1. 12	" 230 "	"	"	농지대가 미보상액 일체정비
6-90	" 1. 19	" 234 "	"	"	착오 발급 지가증권 시정처리
6-91	63. 2. 28	농지정 1141.21-473	"	"	농지대가 보상금 지불절차에 대한 질의
6-92	68. -1.29	지정 1141.21-285	"	"	분배농지 보상금지급에 대한 질의

⑦ 農地代價償還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7-1	50. 6. 9	農地第 797 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償還事務取扱에 관한 件
7-2	" 7.10	慶北糧第 "	慶 北 知 事	各廳長·郡守	4283年産 夏穀確保 要綱(歸屬農地 및 農地改革年賦償還分) 決定에 관한 件
7-3	" 10.30	農地第 3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改革 實施 及 臨時 措置의 件
7-4	" 11. 8	" 3 "	"	"	"
7-5	" 12. 4	" 75 "	"	"	農地償還額假償還에 對한 精算에 관한 件
7-6	" "	" 76 "	"	"	秋雜穀 償還에 관한 件
7-7	" 12. 7	" 93 "	"	"	償還事務 限界에 관한 件
7-8	" 12. 8	" 97 "	"	"	農地 改革 協助依賴의 件
7-9	51. 2. 1	" 24 "	"	"	農地 改革 償還事務에 관한 質疑의 件
7-10	" 2.18	" 56 "	"	"	農地 償還額假償還에 對한 精算에 관한 件
7-11	" 2.28	歸農處第 83 "	歸屬農地管理局長	歸農地方局長	農地 償還額假償還에 對한 精算에 관한 件
7-12	" 3.13	農地第 129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償還事務取扱에 관한 件
7-13	" 4.29	" "	"	"	地價證券으로서 歸屬農地代價 納付者 取扱에 관한 件
7-14	" 5. 8	歸農第 75 "	歸屬農地管理局長	歸農地方局長	償還事務取扱에 對한 質疑에 관한 件
7-15	" 6.30	農地第 481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 償還額 一時 償還에 관한 件
7-16	" 9. 5	歸農第 323 "	歸屬農地管理局長	歸農地方局長	4283年度分 未納償還額 整理에 관한 件
7-17	" 10.19	" 359 "	"	"	「歸屬農地 特別措置法」第 2 條 適用에 관한 件
7-18	" 11.25	農地第 381 "	農 林 部 長 官	各道産業局長	歸屬 分配農地에 對한 一時償還 또는 償還期間 伸縮에 관한件
7-19	52. 3.30	" 658 "	農 地 局 長	各 道 知 事	農地 代價 償還穀移讓證 提出에 관한 件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7-20	52. 5.13	農地第 914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 償還額 一時 償還에 관한 件
7-21	53. 3.16	" 447"	"	"	分配農地에 對한 地籍整理後의 事務處理에 관한 件
7-22	" 3.30	" 783"	"	"	提訴 및 自進返還農地에 對한 既償還額 補償에 관한 件
7-23	" "	" 991"	"	"	公共用地로 編入된 分配農地의 償還事務 取扱에 관한 件
7-24	" 4.17	" 991"	"	"	公共用地로 編入된 分配農地의 償還事務 取扱에 관한 件
7-25	" 4.30	" 1,301"	"	"	農地代價 償還穀收納에 관한 件
7-26	" 5. 7	" 1,347"	"	"	公共用地로 編入된 分配農地의 償還事務 取扱에 관한 件
7-27	" 5. 9	" 1,566"	"	"	農地 償還 事務에 對한 質疑의 件
7-28	" 9.10	" 1,532"	"	"	認許 農地 償還 事務 取扱에 관한 件
7-29	" 9.10	" "	"	"	分配 農地中 採金地 및 土炭採掘地에 對한 償還措置에 관한 件
7-30	" 9.10	" 1,301"	農地管理局長	各道產業局長	農地代價 償還 穀收納에 관한 件
7-31	" 9.10	" 1,301"	"	"	"
7-32	" 9.14	" 977"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代價 償還에 對한 精算에 관한 件
7-33	54. 1.20	" "	"	"	公共用地로 編入된 分配農地의 償還事務에 관한 件
7-34	" 1.23	" "	"	"	償還穀未納 特殊農地에 對한 收納措置에 관한 件
7-35	" 5. 8	" 599"	農地管理局長	各道產業局長	農地代價 償還事務에 관한 件
7-36	" 6. 1	" "	"	"	公共用地로 編入된 分配農地 償還事務 取扱에 관한 件
7-37	" 6.30	" 910"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償還事務 取扱에 관한 件
7-38	" 9.23	" 1,275"	農地管理局長	各道產業局長	南朝鮮過政法令 第 173 號 既納量整理에 관한 質疑의 件

資料 番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7-39	54. 9.27.	農地第 906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償還事務 取扱에 관한 件
7-40	" 11.13	" 1,890"	"	"	"
7-41	55. 3.16	" "	農地管理局長	各道産業局長	農地代價 一時償還에 관한 件
7-42	" 3.25	" 65"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移讓穀物 確認證整備事務 取扱에 관한 件
7-43	" 5.26	" 1,267"	"	"	4283年度 農地償還未納額 收納處理에 관한 件
7-44	" 8.16	" 2,015"	"	"	農地代價 償還額 精算에 관한 件
7-45	56. 1.25	" 246"	"	"	分配農地 地籍整理로 인한 償還額 精算에 관한 件
7-46	" 7.18	" 1,554"	"	"	農地代價 償還穀收納에 관한 件
7-47	" 8.14	" 1,581"	"	"	農地代價 償還額 證券代納承認分 收納에 관한 件
7-48	" 9. 2	" 2,040"	"	"	分配農地에 對한 農改法 第18條適用에 관한 件
7-49	" 9.12	" 1,886"	"	"	寺刹自耕確認 農地處理에 관한 件
7-50	57. 5.28	" 1,295"	農 林 部 次 官	"	農地代價 償還穀收納에 對한 質疑의 件
7-51	" 6. 7	" "	農地管理局長	各道産業局長	農地代價 償還穀收納에 對한 質疑의 件
7-52	" 7.31	" "	農 林 部 次 官	各 道 知 事	分配農地代價 償還額精算에 관한 件
7-53	" 8.24	" 2,254"	農 林 部 長 官	"	償還事務 取扱에 관한 件
7-54	" 9.24	" "	農 林 部 次 官	"	農地代價 償還額精算에 관한 件
7-55	" 12.26	" 4,046"	농림부장관	각 도 지 사	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사무 취급에 관한 件
7-56	58. 7.27	" 2,344"	"	"	분배농지 반환소송에 의한 기상환액 보상에 관한 件
7-57	60. 5. 4	" "	농림부차관	"	농지대가 상환액정산에 관한 件
7-58	" 11.24	" 3,526"	농림부사무차관	"	지적정리로 인한 미납액상환에 관한 件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7-59	60.12.21	농지제 3,934호	농림부장관	각 도 지 사	군용지 및 도로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대가 상환사무처리에 관한 건
7-60	61. 4.18	" 508"	農林部事務次官	各 道 知 事	農地代價 償還滯納金 徵收規程 制定의 件
7-61	4.27	" 220"	농림부사무차관	각 도 지 사	농지대가 상환채 납금 처분집행절차 제정의 건
7-62	8. 5	" 2,814"	농림부장관	"	농지대가 상환액 수납에 관한 건
7-63	11.21	" 4,899"	"	"	군용지 및 도로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대가 상환사무처리
7-64	62. 5.19	" 3,366"	"	"	62년도 농지대가 상환액 수납가격 적용
7-65	68.12. 4	농지정 1141-6288	"	"	농지대가 과오납금 반환
7-66	74. 8. 8	" 810-1652	농수산부장관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용

⑧ 多年性植物栽培農地

資料 番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8-1	50. 4. 12	農地第 383 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改革實施에 隨件한 多年性 植物栽培農地一覽表送付에 관한 件
8-2	" 5. 26	" 756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競賣入札 事務 取扱에 관한 件
8-3	" "	" 758 "	"	"	特別査定委員會 運用 規則에 관한 件
8-4	" 6. 9	" 756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入札競賣 事務 取扱에 관한 件
8-5	51. 2. 6	" 96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管理人 規程에 관한 件
8-6	" 2. 19	" 71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果樹園 및 桑田) 評價要領 制定에 관 한 件
8-7	" 2. 23	" 90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競賣入札 事務 取扱에 관한 件
8-8	" 2. 27	歸屬處第 86 "	歸屬農地管理 局 長	歸農地方局長	歸屬多年性植物栽培農地 事務 取扱에 관한 件
8-9	" 3. 1	" 88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歸農地方局長	歸屬多年性植物栽培農地 入札競賣公告에 관한 件
8-10	" 3. 13	農地第 70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評價의 基本生産品 單價決定에 관한 件
8-11	" 3. 15	" 127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管理運營에 관한 質疑의 件
8-12	" 3. 19	" 141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入札競賣 事務 取扱에 관한 件
8-13	" 3. 19	" 144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評價要領에 관한 件
8-14	" 3. 24	" 163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入札競賣 事務 取扱에 관한 件
8-15	" 4. 14	" 243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競賣入札 事務 取扱에 관한 件
8-16	" 4. 14	" 244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特別査定에 要하는 經費支辨에 관한 件
8-17	" 4. 26	" 252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の 償還證書 및 地價證券 發給에 관한 件
8-18	" 4. 26	" 285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競賣入札 事務 取扱에 관한 件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8-19	51. 5. 18	歸屬第 96 號	農 林 部 長 官	歸農地方局長	多年性植物栽培農地 競賣入札 事務 取扱에 對한 質疑에 關한 件
8-20	" 6. 13	" 529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多年性植物栽培農地 競賣入札에 關한 質疑의 件
8-21	" 7. 22	" 976 "	"	"	特別査定委員會 運用 規則에 關한 件
8-22	" 10. 16	" 356 "	歸屬農地管理 局 長	歸農地方局長	農地改革 事務 質疑에 關한 件
8-23	" 11. 10	" 431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歸農地方局長	多年性植物栽培農地 競賣入札 事務 取扱에 關한 件
8-24	52. 2. 17	" " "	"	各 道 知 事	地價證券으로서 歸屬多年性植物栽培農地の 賣却代金を 入札 保證金에 充當 納入하였을 경우의 收納事務取扱要領에 關한 件
8-25	52. 2. 17	農地第 628 "	"	各 道 知 事 韓銀殖銀總裁	地價證券으로서 歸屬多年性植物栽培農地の 賣却代金 및 入 札保證金 및 入札保證金에 充當 納入하였을 경우의 納入事 務取扱要領에 關한 件
8-26	52. 2. 1	" 411 "	"	各 道 知 事	多年性植物農地(苧麻田・楮田) 評價要領制定에 關한 件
8-27	" 2. 28	" 420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入札競賣 事務 取扱에 關한 件
8-28	" 2. 28	" 428 "	農 地 局 長	各道產業局長	多年性植物栽培農地 入札競賣 事務 取扱에 關한 件
8-29	" 9. 1	" 1,930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入札競賣 實施에 關한 質疑의 件
8-30	" " "	" " "	"	"	文教財團에 關한 質疑의 件
8-31	55. 5. 21	" 1,256 "	"	"	4287 年產 多年性植物栽培農地の 生產品 單價決定의 件
8-32	" 10. 25	" 2,366 "	"	"	多年性植物栽培農地 競賣入札에 關한 質疑의 件
8-33	56. 9. 20	" 495 "	"	"	4288 年產 多年性植物栽培農地の 生產品 單價決定의 件
8-34	59.11. 26	" 3,646 "	농림부장관	각 도 지 사	다년성식물재배농지 보상에 關한 件
8-35	60. 7. 22	" 2,120 "	"	"	다년성식물재배농지 평가요령 일부 개정의 件

⑨ 農地附屬施設

資料 番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9-1	51. 4. 28	農地第 149 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附屬施設 評價에 관한 件
9-2	" 7. 23	" 753 "	"	"	干拓農地附屬施設の 償還에 관한 件
9-3	54. 7. 29	" "	"	"	農地附屬施設 分配處分에 관한 件
9-4	58. 9. 30	농지제 3,131 호	농 립 부 장 관	각 도 지 사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 제정의견
9-5	" 10. 22	" 3,131 "	농 립 부 차 관	"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 제정의견
9-6	" 11. 19	" 3,972 "	"	"	부속시설 보상요강 제정의견
9-7	59. 4. 3	" 620 "	"	"	농지부속시설 결정의견
9-8	" 5. 25	" 2,240 "	"	"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에 대한 질의에 관한 건
9-9	" 5. 27	" 2,255 "	"	"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 제정의견
9-10	61. 3. 6	農地第 828 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附屬施設 補償要綱 施行에 관한 件
9-11	62. 2. 2	농지제 867 호	농 립 부 장 관	각 도 지 사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부속시설 보상실시
9-12	63. 11. 12	농지정 1141.23-4467	"	"	귀속재산 사용료 납부통지에 대한 질의
9-13	65. 3. 3	1141.23-896	"	"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 일부 개정
9-14	66. 2. 22	1141. 4-1119	"	"	농지부속시설 관리
9-15	" 9. 30	1141.23-5143	"	"	농지부속시설 인정신청
9-16	69. 11. 6	지정 1141.4 -	"	"	농지부속시설 양여사무처리 요령

⑩ 三八以北 收復地區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10- 1	55. 4. 9	農地第 495號	農 林 部 長 官	江 原 知 事	收復地區 農地改革實施에 관한 臨時措置의 件
10- 2	" 7.20	" 1,889 "	"	京 畿 知 事	收復地區 農地改革實施에 관한 臨時措置의 件
10- 3	56. 8.11	" 1,809 "	"	江 原 知 事	收復地區 農地改革法適用에 관한 質疑의 件
10- 4	58. 1.21	내치정제 394호	내 부 부 장 관	농 립 부 장 관	수복지구 농지개혁실시에 대한 부민여론의 건
10- 5	" 3.20	농 지 제 150호	농지관리국장	경 기 · 강 원 산 업 국 장	"38 이북수복지구" 농지개혁사업실시에 관한 건
10- 6	" 4.11	" 1,169 "	농 립 부 장 관	각 도 지 사	"38 이북수복지구" 농지개혁실시에 관한 건
10- 7	" 5. 5	" "	농 립 부 차 관	"	"38 이북수복지구" 농지개혁실시에 관한 건
10- 8	" 5.15	" 1,520 "	"	"	수복지구 농지개혁사무에 대한 지도에 관한 건
10- 9	" 5.16	" "	농지관리국장	경 기 · 강 원 산 업 국 장	"38 이북수복지구"에 대한 문서전명처리에 관한 건
10-10	" 7. 6	" 2,103 "	농 립 부 장 관	경기·강원지사	"38 이북" 농지개혁사업 통계에 관한 건
10-11	" 7.14	" 2,153 "	"	"	"38 이북" 농지개혁실시지역조사의 건
10-12	" 7.31	" 1,915 "	"	"	"38 이북" 4291 년산 하곡상환에 관한 건
10-13	" 9.16	" 2,367 "	"	국 방 부 장 관	진정서 처리에 관한 건
10-14	" 9.16	" 2,883 "	"	강 원 지 사	"38 이북" 수복지구 귀속농지관리에 대한 질의에 관한 건
10-15	" 9.20	" "	농지관리국장	각 도 지 사	"38 이북" 지가보상사무취급에 대한 질의의 건
10-16	" 9.30	農地第 3,037號	農 林 部 長 官	京畿·江原知事	收復地區 農地改革實施에 隨伴한 農地代價償還措置의 件
10-17	" 12.23	농지제 4,506호	농 립 부 장 관	각 도 지 사	"38 이북" 분배농지대가보상사무절차의 건
10-18	59. 2.20	" 826 "	농 립 부 차 관	경기·강원지사	"38 이북" 농지의 분배 또는 취소처분절차에 관한 건
10-19	" 3.13	" 1,009 "	"	경 기 지 사	"38 이북" 수복지구 지가증원발급에 수반한 체감을 적용에 대한 질의의 건

資 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10-20	59. 3. 20	농지제 1,327 호	농 립 부 차 관	경기·강원지사	“38선이북” 농지개혁사업통계표 서식변경의 건
10-21	“ 5. 4	“ 1,449 “	“	“	“38선이북” 농지개혁실시에 관한 질의의 건
10-22	“ 5. 8	“ 2,025 “	농지관리국장	“	“38선이북” 농지개혁관계 통계표 제출에 관한 건
10-23	“ 6. 1	“ 2,776 “	농 립 부 장 관	“	“38선이북” 지주분배농지 지가증원 상환에 관한 건
10-24	“ 6. 25	교경제 제 797 의 2호	교 통 부 장 관	농 립 부 장 관	“38선이북” 국유농지분배의 건
10-25	“ 8. 31	농지제 2,313 호	농 립 부 장 관	국 방 부 장 관	“38선이북” 농지연고권자의 경작회복에 관한 건
10-26	“ 10. 1	“ 1,917 “	농 립 부 차 관	경 기 지 사	“38선이북” 수복지구 농지분배처리에 대한 질의에 관한 건
10-27	“ 10. 20	“ 3,850 “	농 립 부 장 관	경기·강원지사	“38선이북” 분배농지대가 상환사무처리의 건
10-28	“ 10. 20	“ 3,851 “	“	“	“38선이북” 분배농가가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의 사무처리의 건
10-29	“ 10. 20	“ 3,853 “	“	“	“38선이북” 농지분배 및 이동정리 사무절차의 건
10-30	“ 12. 2	“ 3,304 “	농 립 부 차 관	경 기 지 사	“38선이북” 농지분배에 관한 건
10-31	“ 12. 28	“ 4,600 “	농 립 부 장 관	경기·강원지사	“38선이북” 미입주지구에 있어서의 농지개혁법의 효력에 관한 건
10-32	60. 3. 1	국방제 991 “	국 방 부 장 관	농 립 부 장 관	수복지구 농지경작권 회복의 건
10-33	61. 9. 23	농지제 3,464 “	농 립 부 장 관	경기·강원지사	“38이북” 수복지구 농지개혁법 적용에 관한 건

⑪ 地 籍 整 理

資 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11- 1	51. 8.31	農地第 840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分配農地 所有權移轉登記에 관한 件
11- 2	" 10.14	歸農第 353 "	"	"	歸屬分配農地 所有權移轉登記에 관한 件
11- 3	52. 1.17	農地第 108 "	農 林 部 次 官	"	分配農地 所有權移轉登記에 관한 件
11- 4	" 11.15	" 2,566 "	農地管理局長	各道產業局長	分配農地 所有權移轉登記 關係質疑의 件
11- 5	53 9.10	" 2,024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分配農地 所有權移轉 및 附屬登記 手續節次에 관한 件
11- 6	54. 3.10	" "	"	"	農改法에 의한 分配農地 附屬登記 手續節次에 관한 件
11- 7	" 6. 7	" "	"	"	4287 年度 分配農地 地籍整理 實施에 관한 件
11- 8	" 7.16	" "	"	"	農地改革法에 의한 分配農地에 대하여 相續稅賦課에 관한 件
11- 9	" 7.29	" "	"	"	分配農地 抵當權抹消登記 手續節次에 관한 件
11-10	" 11. 9	" 1,859 "	農地管理局長	各道產業局長	分配農地中 地目變更地 等 異動整理에 관한 件
11-11	" 12.28	"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分配農地登記 事務 取扱에 관한 件
11-12	55. 3.26	" 664 "	"	"	分配農地登記 手續節次에 관한 件
11-13	" 4.21	" 929 "	"	"	分配農地 地籍整理 및 登記手續에 관한 質疑의 件
11-14	" 4.29	" 463 "	農地管理局長	各道產業局長	分配農地中 轉賣農地 所有權移轉登記 手續節次 質疑의 件
11-15	" 7. 4	" "	"	"	分配農地登記 事務 取扱에 관한 件
11-16	" 7.30	" 1,944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改革法 實施에 隨伴한 登記事務 取扱에 관한 件
11-17	" 9. 9	" "	農地管理局長	各道產業局長	分配農地 地目變更 異動整理에 관한 件
11-18	" 9.26	"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改革法에 의한 分配農地 分割測量委託契約 締結에 관한 件
11-19	" 10.14	法行法第602 "	大 法 院 長	農 林 部 長 官 財 務 部 長 官	歸屬土地移轉登記에 관한 件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11-20	55.10.27	農地第2,387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分配農地 登記事務 取扱에 관한 件
11-21	" 10.28	" "	" "	" "	農地改革法에 의한 分配農地 所有權移轉登記 委託契約締結 의 件
11-22	" 12. 2	" 4,326 "	" "	" "	分配農地 登記事務 實施에 관한 件
11-23	56. 1.20	" "	" "	忠 南 知 事	分配農地 登記手續節次에 對한 質疑의 件
11-24	" 1.31	" 95 "	大 法 院 長	農 林 部 長 官	登記事務에 관한 質疑의 件
11-25	" 2.21	" 218 "	農 林 部 次 官	各 道 知 事	分配農地 所有權保存登記 事務取扱의 件
11-26	" 3. 2	" 666 "	" "	" "	農地改革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實施에 관한 件
11-27	" 3.16	" 751 "	" "	" "	分配農地 分割測量 및 登記事務 實施에 관한 件
11-28	" 3.22	" 463 "	" "	" "	登記事務에 관한 質疑의 件
11-29	" 5.17	" "	農 林 部 長 官	" "	農地改革法에 의한 移轉登記 手續節次에 관한 件
11-30	" 5.23	" 974 "	農 林 部 次 官	" "	分配農地 所有權移轉登記에 관한 質疑의 件
11-31	" 5.23	" 1,123 "	" "	" "	農地改革法에 의한 分配農地 地籍誤謬訂正에 관한 件
11-32	" 5.30	" "	" "	" "	分配農地 抵當權抹消에 관한 質疑의 件
11-33	" 6. 3	" 1,109 "	" "	" "	分配農地 抵當權抹消에 對한 質疑의 件
11-34	57. 3. 4	" 456 "	" "	各道産業局長	訴請敗訴 農地所有權移轉登記 手續履行 質疑에 관한 件
11-35	" 4. 8	" 1,099 "	" "	各 道 知 事	抵當權抹消登記에 관한 質疑의 件
11-36	" 7.15	" "	農地管理局長	各道産業局長	法院管轄外 分配農地 登記業務 處理의 件
11-37	" 12.26	" "	" "	" "	分配農地 所有權移轉登記 申請에 관한 質疑의 件

資 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11-38	58. 2. 21	農地第 741號	農 林 部 次 官	各道產業局長	分配農地 所有權移轉登記에 隨伴하는 附屬登記 手續節次에 관한 件
11-39	" 2. 27	" "	農地管理局長	"	分配農地 更正登記 手續에 관한 件
11-40	" 5. 1	" "	"	"	分配農地 所有權移轉登記 手續節次 質疑의 件
11-41	" "	" "	"	"	分配農地 抵當權抹消 登記手續의 件
11-42	" 10. 5	" "	農 地 部 長 官	서울特別市長	分配農地 所有權移轉登記에 隨伴하는 附屬登記 手續節次 質疑의 件
11-43	60. 10. 4	농지제 2,742호	농 립 부 차 관	각 도 지 사	분배농지 등기수속절차에 관한 건
11-44	61. 1. 18	" 259 "	농림부사무차관	"	분배농지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절차에 관한 건
11-45	" 5. 12	" 602 "	農林部事務次官	各 道 知 事	分配農地 所有權移轉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制定에 관한 件
11-46	63. 5. 29	농지정 1141.32-1933	농 립 부 장 관	각 도 지 사	법령 공포통지
11-47	64. 10. 22	" 1141.32-6316	"	"	국유지분등기된 농지의분할 측량실시
11-48	65. 1. 15	" 1141.32- 187	"	"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연기
11-49	" 6. 15	" 1141.32-2824	"	"	분배농지 분할측량 실시
11-50	66. 9. 15	" 1141.32-4901	"	"	분배농지 이전등기 완료증명서 발급
11-51	" 12. 6	" 1141.31-6291	"	"	농지개혁운영에 관한 질의
11-52	68. 7. 4	" 1141.32-4069	"	"	특조법제 9 조의 양도농지과세에 대한 질의
11-53	71. 5. 7	" 1141. -1304	"	"	분배농지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11-54	71. 7. 14	" 1141. -1941	"	"	증명서 발급에 대한 질의

⑫ 訴 訟

資 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12-1	48. 7. 15	歸農第 261 號	歸屬農地管理局長	各歸農地方局長	訴訟 事務處理에 관한 件
12-2	49. 2. 6	" 67 "	"	"	歸屬 農地에 관한 件
12-3	" 2. 21	" 25 "	"	"	訴訟 事務處理 方針에 對한 件
12-4	" 4. 27	" 162 "	"	"	控訴提起 及 再審請求에 관한 件
12-5	" 7. 30	" 305 "	"	"	訴訟 事務處理에 관한 件
12-6	" 8. 3	" 157 "	"	"	敗訴土地에 對한 耕作料 及 土地代價返還金 算出에 관한 件
12-7	" "	" 319 "	"	"	訴訟 事務取扱에 관한 件
12-8	" 10. 25	" 480 "	"	"	敗訴事件 土地代價 支出에 관한 件
12-9	50. 5. 9	" 276 "	"	"	歸屬土地에 관한 件
12-10	" 11. 16	" 57 "	"	"	訴訟 事務處理에 관한 件
12-11	51. 1. 29	" 27 "	"	"	土地所有權 確認訴訟事件 處理의 件
12-12	" 4. 2	農地第 186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地紛爭調停事件 處理의 件
12-13	" 5. 19	" 314 "	"	"	農地分配 事務處理에 관한 件
12-14	" 12. 1	歸農第 453 "	歸屬農地管理局長	各歸農地方局長	訴訟關係 賠償金 清算書 作成에 관한 件
12-15	" 12. 29	" 51 "	"	"	訴訟關係 賠償金 清算書 作成 及 清算金 支拂에 관한 件
12-16	" 12. 30	" "	"	"	上訴 事務取扱에 관한 件
12-17	52. 6. 18	農地第 1,304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訴訟 事務進行狀況 月例報告書 提出의 件
12-18	" 7. 6	" 1,418 "	"	"	歸屬農地에 對한 訴訟事務處理에 관한 件
12-19	" 7. 8	" 1,420 "	"	"	訴訟事務處理에 관한 件
12-20	" 7. 22	" 1,707 "	農 林 部 長 官 法 務 部 長 官	"	歸屬農地 訴訟事務取扱에 관한 件

資 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12-21	52. 12. 18	農地第 3,152 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訴訟事務 質疑의 件
12-22	53. 1. 2	" 29 "	"	"	歸屬農地 訴訟事務 取扱에 관한 件
12-23	" 1. 3	" 3,261 "	"	"	歸屬農地 訴訟事務 取扱에 관한 件
12-24	" 3. 4	" 637 "	農 地 管 理 局 長	各 道 產 業 局 長	4285 年度 歸屬農地 訴訟事件 賠償金穀種別 換算代錢率 決定의 件
12-25	" 7. 1	" 1,828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訴訟事務取扱에 관한 件
12-26	" 11. 19	" 1,999 "	"	"	歸屬敗訴農地 賠償金 清算書 作成에 관한 件
12-27	" 12. 28	" 2,995 "	"	"	歸屬農地 賠償金 清算書 作成에 관한 件
12-28	54. 5. 12	" "	"	"	歸屬農地 訴訟事務取扱에 관한 件
12-29	" 5. 17	" "	"	"	歸屬農地 訴訟狀況報告에 관한 件
12-30	" 6. 11	" "	"	"	歸屬農地 訴訟事務取扱에 관한 件
12-31	" 6. 24	" "	"	"	歸屬敗訴農地 賠償金 清算에 隨伴한 4286 年產 穀種別 換算 代錢率 決定의 件
12-32	" 7. 27	" 1,067 "	"	"	歸屬農地 訴訟事件 控訴 및 上告取扱에 관한 件
12-33	" 7. 29	" 1,095 "	"	"	訴訟事務取扱에 관한 件
12-34	" 12. 16	" "	"	"	自耕農地 確認 및 土地引度 判決에 관한 件
12-35	55. 1. 31	法制 2 第 "	法 制 處 長	"	不在附逆者 自作農地 處分에 관한 質疑의 件
12-36	56. 11. 15	農地第 2,484 "	農 林 部 次 官	"	原告敗訴 農地耕作料 徵收에 對한 質疑의 件
12-37	" 12. 13	" 2,040 "	農 林 部 長 官	"	分配農地 返還 請求訴訟 提起에 관한 件
12-38	57. 1. 26	" 1,585 "	農 林 部 次 官	"	分配農地 返還 請求訴訟 事務取扱에 관한 件

資料 番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12-39	57. 2. 6	農地第 274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農改法 第 18條 提訴對象者 選定에 관한 件
12-40	" 2. 20	" 274"	農 林 部 次 官	"	農地法 第 18條 提訴對象者 選定에 관한 件
12-41	" 3. 4	" 456"	"	"	訴請敗訴農地 所有權移轉 登記手續履行 質疑에 관한 件
12-42	" 4. 6	" 1,209"	"	全 北 知 事	分配農地 立稻를 差押當한 경우의 處理의 件
12-43	" 4. 9	" 926"	農地管理局長	各道產業局長	分配農地返還 請求訴訟 事務에 對한 質疑의 件
12-44	" 5. 4	" 1,392"	農 地 部 次 官	慶 南 知 事	敗訴農地 返還金 支拂 承認에 對한 質疑의 件
12-45	" 5. 14	" 1,559"	農地管理局長	各道產業局長	分配農地 返還請求訴訟 事務에 對한 質疑의 件
12-46	" 7. 2	" 2,205"	農 林 部 次 官	忠 北 知 事	分配農地 返還請求訴訟 事務取扱에 관한 質疑의 件
12-47	" 9. 28	농지제2,824호	"	各 道 知 事	分配農地 返還請求訴訟에 對한 訴訟費用負擔에 관한 件
12-48	" 11. 28	" 3,471"	농 립 부 차 관	충 남 지 사	분배농지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에 관한 건
12-49	58. 1. 17	" 177"	"	각 도 지 사	소송수행에 관한 건
12-50	" 3. 22	" "	농지관리국장	각도산업국장	분배농지 반환청구소송취하 사무처리에 관한 건
12-51	" 5. 1	" "	농 립 부 차 장	각 도 지 사	소송사무 처리에 대한 일
12-52	" 9. 6	" 2,785"	"	"	분배농지 반환청구소송사건 피소자 선정에 대한 일
12-53	" 9. 19	" 2,024"	농 립 부 장 관	"	국가가 신청하는 제절차에 수반하는 보증금에 대한 일
12-54	" 10. 23	" 3,513"	농지관리국장	각도산업국장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물가액 및 소송비용 지출 상황보고 이 행의 건
12-55	59. 6. 25	" 2,634"	농 립 부 장 관	각 도 지 사	농지개혁 실시에 따른 이의 사무처리에 대한 건
12-56	" 11. 4	" 2,995"	"	"	소취하 권한 부여에 대한 건

資料 番號	施行 年月日	文書番號	發信機關	受信機關	題 目
12-57	60. 4. 14	농지제 1,206호	농 립 부 장 관	각 도 지 사	분배농지 반환청구소송에 수반한 소송비용 징수에 관한 질 의의 건
12-58	61. 6. 10	" 1,496"	"	"	농지반환 청구소송 비용징수조치의 건
12-59	61. 12. 18	" "	"	"	인지침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12-60	65. 12. 22	농지정 811.11-657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의 강화
12-61	66. 9. 15	농림예규제 75호	"	"	소송사무의 강화
12-62	" 9. 28	농지정 811.11-5113	"	"	강제집행에 대한 지시
12-63	" 10. 18	" - 5370	"	"	행정처분 효력에 대한 질의
12-64	67. 6. 9	" - 2030	"	"	소송비용 정산요령
12-65	" 7. 13	" - 2470	"	"	소송수행에 관한 협조
12-66	" 8. 17	" - 2918	"	"	소송사무의 강화
12-67	68. 3. 11	" - 1545	"	"	농지관계 소송사무 취급의 강화
12-68	69. 3. 8	" - 79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지시
12-69	" 5. 13	" - 1776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지시
12-70	70. 6. 9	" - 1926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체제 개편
12-71	" 11. 25	" - 3888	"	"	소송참고자료 송부

⑬ 管 財

資 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13-1	51. 6. 25	歸農第 235號	農 林 部 長 官	管 財 廳 長	歸屬財産 管理移管에 관한 件
13-2	52. 5. 15	農地第 944 "	"	各 道 知 事	歸屬雜種地 管理運營에 관한 件
13-3	" 6. 20	" 1,053 "	"	"	歸屬牧場 乳牛賃貸料 引上에 관한 件
13-4	" 7. 11	" 1,561 "	"	"	歸屬干拓地 管理運營에 관한 件
13-5	" 10. 22	" 1,950 "	"	"	歸屬干拓地 管理運營에 관한 件
13-6	" 11. 18	" 2,532 "	"	"	歸屬農地附帶財産管理處分에 관한 質疑의 件
13-7	53. 2. 13	" 496 "	"	"	歸屬牧場賃貸料 引上에 관한 件
13-8	" 4. 25	" 1,410 "	"	"	歸屬干拓地 賃貸料調整에 관한 件
13-9	" 5. 9	管理第 1,391 "	農 林 部 長 官 管 財 廳 長	各 道 知 事 各道管財局長	歸屬財産管理移管에 관한 件
13-10	" 7. 7	農地第 1,836 "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歸屬財産拂下處分要綱制定에 관한 件
13-11	" 9. 2	" 1,836 "	農地管理局長	各道産業局長	歸屬財産拂下에 관한 件
13-12	" 9. 17	" 2,274 "	農 林 部 長 官	慶 南 知 事	歸屬雜種地拂下에 對한 質疑의 件
13-13	" 11. 19	" 1,414 "	"	各 道 知 事	歸屬干拓地(鹽田) 賃貸料調整에 對한 質疑의 件
13-14	54. 2. 4	" 250 "	"	"	歸屬干拓地(鹽田)管理限界에 관한 件
13-15	" 6. 7	" "	"	"	歸屬雜種地 管理運營에 관한 件
13-16	" 12. 31	" 110 "	"	"	歸屬財産管理移管에 관한 件
13-17	55. 4. 25	" 948 "	"	"	歸屬雜種地管理移管에 관한 件
13-18	" 11. 16	" 2,240 "	"	"	歸屬雜種地拂下處分要綱制定의 件
13-19	" 12. 2	" 2,453 "	"	"	歸屬財産時價表改正의 件
13-20	56. 2. 20	" 547 "	農 林 部 次 官	"	歸屬雜種地管理에 관한 質疑의 件
13-21	" 4. 24	" 1,214 "	"	"	歸屬農地 및 附帶財産管理에 관한 件

資料 番 號	施 行 年 月 日	文 書 番 號	發 信 機 關	受 信 機 關	題 目
13-22	56. 4. 25	農地第 750號	農 林 部 次 官	各 道 知 事	歸屬雜種地拂下處分要綱規定事項 質疑의 件
13-23	8. 14	" 1838 "	農 林 部 長 官	"	國有未墾地 貸付料에 관한 件
13-24	57. 6. 12	" 2050 "	農 林 部 次 官	"	歸屬雜種地 및 干拓地(鹽田) 拂下處分要綱改正의 件
13-25	9. 24	" "	農地管理局長	各道産業局長	歸屬雜種地拂下處分公告에 관한 件
13-26	10. 10	" "	農 林 部 次 官	各 道 知 事	歸屬雜種地 및 干拓地拂下處分에 對한 内部委任의 件
13-27	58. 1. 27	농지제 27호	농 립 부 장 관	재 무 부 장 관	귀속대지관리한계에 관한 건
13-28	4. 12	" 1219 "	농 립 부 차 관	각 도 지 사	귀속잡종지 및 간척지불하처분요강에 대한 질의의 건
13-29	4. 12	" 1220 "	"	"	귀속잡종지 불하처분에 관한 질의의 건
13-30	8. 12	農地 第 號	農 林 部 長 官	各 道 知 事	歸屬雜種地拂下地에 對한 分割測量 및 登記事務實施의 件
13-31	10. 7	농지제 1919호	농 립 부 차 관	경 기 지 사	임대농지 경작료조정에 대한 질의의 건
13-32	59. 4. 18	" "	농 립 부 장 관 재 무 부 장 관	각 도 지 사 각 도 관 재 국 장	귀속잡종지 처리에 관한 건
13-33	61. 6. 14	" 2033 "	농림부사무차관	각 도 지 사	귀속불하 염전 이전등기수속에 관한 질의의 건
13-34	64. 11. 5	농지정 1141.41-6561	농 립 부 장 관	각 도 지 사	귀속잡종지 소유권이전등기
13-35	65. 3. 9	농지정 1141.42-1035	"	"	귀속임대차 계약농지불하에 관한 질의